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26호 2020. 2. 14.(금)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392호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3
○ 하동군 조례 제2393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6
○ 하동군 조례 제2394호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하동군 조례 제2395호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폐지조례 14
○ 하동군 조례 제2396호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
○ 하동군 조례 제2397호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20
○ 하동군 조례 제2398호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4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0-2호	상촌(정기룡)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 34
○ 하동군 고시 제2020-3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 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36
○ 하동군 고시 제2020-5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 시행계획(변경) 인가 고시 38
○ 하동군 고시 제2020-6호	하천점용 연장허가 고시 40
○ 하동군 고시 제2020-1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42
○ 하동군 고시 제2020-15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영산강홍수통제소장) 45
○ 하동군 고시 제2020-18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46
○ 하동군 고시 제2020-21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한태*) 49
○ 하동군 고시 제2020-22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준공완료 고시(박순*) 51
○ 하동군 고시 제2020-28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정중*) 53

회 람									
--------	--	--	--	--	--	--	--	--	--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0-11호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안 입법예고 54
- 하동군 공고 제2020-102호 입법예고문(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 하동군 공고 제2020-142호 입법예고문(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8
- 하동군 공고 제2020-144호 입법예고문(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 하동군 공고 제2020-202호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78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20-23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쇄 청구 연서 주민수 공표 82
- 하동군 공고 제2020-41호 범야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변경) 공고 86
- 하동군 공고 제2020-42호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 88
-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1호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7급상당 홍보 전문가) 채용시험 공고 90
-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2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104
- 하동군 공고 제2020-21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118
- 하동군 화개면 공고 제2020-6호 2019년추기 및 2020춘기 산불감시원 채용공고(2차) 124
- 하동군 공고 제2020-66호 2020년도 명예퇴직 시행 계획 134
- 하동군 공고 제2020-68호 2020년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제도 공고 140
-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3호 2020년도 제1회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7급상당 홍보 전문가) 채용시험 재공고 157
-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4호 2020년도 제2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171
-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5호 2020년 제2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185
- 하동군 공고 제2020-85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소로2-29]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187
-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6호 2020년 제1회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196
-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7호 2020년 제2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198
- 하동군 공고 제2020-118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 199
-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8호 2020년 제1회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17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공고 제2020-7호 2020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공고(의신베어빌리지, 정티움, 평사드레, 직전) 218
- 하동군 공고 제2020-172호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기 지원사업 신청 공고 225
-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9호 2020년도 제2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232
- 하동군 공고 제2020-186호 하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46
- 하동군 공고 제2020-187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소로3-9]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251
- 하동군 공고 제2020-188호 진교 도시계획도로[소로2-6]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258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14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92 호

하동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사

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 표지판, 시설 또는 장비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또는 장비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경우와 장비를 구입한 보조사업자는 시설 또는 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시점 및 장소 등) 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

②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14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93 호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결혼당사자 모두”를 “결혼당사자”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결혼장려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제6항 관련, 제4조제1항 관련)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p>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생애 1회 지원. 다만 결혼당사자 어느 일방의 지원이력이 있으면 신청불가 - 여자의 경우 가임기(만 49세까지) 여성에게만 적용. 다만 다문화가정일 경우, 우리 군의 동종 사업 보조를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한 때 지원 신청 가능 	<p>- 결혼당사자(부부) : 500만원 (단, 첫 회 2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월에 지급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결혼장려 지원”이란 <u>결혼당사자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결혼(재혼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u></p> <p>[별표 3]</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세부사업</th> <th style="width: 55%;">지원대상</th> <th style="width: 30%;">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결혼장려금</td> <td> <u>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부부</u> - 생략 - 생략 </td> <td style="text-align: center;">- 생략</td> </tr> </tbody> </table>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u>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부부</u> - 생략 - 생략	- 생략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결혼당사자</u> ----- ----- ----- ----- ----- -----</p> <p>[별표 3]</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세부사업</th> <th style="width: 55%;">지원대상</th> <th style="width: 30%;">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 음</td> <td> <u>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u> <u>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u> <u>경과한 경우</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td> <td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 음</td> </tr> </tbody> </table>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현행과 같 음	<u>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u> <u>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u> <u>경과한 경우</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 음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결혼장려금	<u>결혼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 전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한 부부</u> - 생략 - 생략	- 생략											
세부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현행과 같 음	<u>결혼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u> <u>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u> <u>경과한 경우</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 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14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94 호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친환경·생태친화적 생산·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라.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

마.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품

- 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품질 인증식품
- 사. 하동군수가 인증하는 농축수산물과 경상남도 추천상품(QC)
-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구매
를 추천·권고·요청한 식품

제3조 중 “군수”를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하동교육청”을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동교육청”을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하동군교육청”을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으로 한
다.

제8조 중 “하동교육청”을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생 략)</p> <p>② “<u>우수농산물</u>”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전통가공 식품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우수농산물</u>”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친환경·생태친화적 생산·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p> <p>가. 「<u>농수산물품질관리법</u>」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이력추적 관리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p> <p>나. 「<u>식품산업진흥법</u>」에 따른 전통식품인증을 받은 식품</p> <p>다.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p> <p>라. 「<u>축산법</u>」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u>축산물위생관리법</u>」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p> <p>마. 「<u>식품위생법</u>」에 의한 위</p>

③·④ (생 략)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군수는 제 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초· 중·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② (생 략)

③ 초· 중학교는 하동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④ (생 략)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 중 학교는 하동교육청을 통하여 제

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품

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품질 인증식품

사. 하동군수가 인증하는 농축수산물과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구매를 추천·권고·요청한 식품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하동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

----- 경상남도하동교육

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제7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생 략)

2. 하동군교육청 관련과장

3. ~ 7. (생 략)

③ ~ ⑤ (생 략)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지급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초·중학교는 하동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청-----
-----.

1. ~ 6.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3. ~ 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

-----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14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95 호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폐지조례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14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96 호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 3. “제한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 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

류장 또는 사육장 안의 가축

4. 전부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가. 소, 말, 젖소, 돼지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나.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30마리 이하

5. 일부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을 하는 경우

가. 소(한우, 육우), 말 :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

나. 돼지 : 15마리 이하

다.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포함) : 모두 합하여 30마리 이하

라.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100마리 이하

마. 젖소 : 15마리 이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제1항 관련)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지정지역 7.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 8.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른 습지 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1.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 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말, 사슴 : 200m 이내 - 젓소 : 300m 이내 - 돼지, 개 : 1,500m 이내 - 닭, 오리, 메추리 : 1,000m 이내 2. 「수도법」 제18조에 따른 하천수(계곡수)를 이용하는 상수원 취수시설의 상류지역과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지역의 반경 200m 이내 지역 3.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4. 법정도로(군도 이상) 경계로부터 100m 이내

※ 비고

1. “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2. “거리”는 주거 밀집지역의 외곽에 위치한 인가의 대지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 부지의 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가축사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이상의 가축사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제한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p> <p><신 설></p>	<p>제2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가축사육”이란 1마리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p> <p>3. “제한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p> <p>4. “주거 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서 5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지역은 <u>별표1</u>과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 할 수 있다.</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 ----- ----- <u>별표와</u> ----- ----- -----.</p> <p>② ----- ----- ----- -----.</p>

1. · 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안의 가축

4. 전부제한구역에서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

가. 소, 말, 젖소, 돼지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나.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포함) :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30마리 이하

5. 일부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을 하는 경우

가. 소(한우, 육우), 말 :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

나. 돼지 : 15마리 이하

다.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포함) : 모두 합하여 30마리 이하

라.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100마리 이하

마. 젖소 : 15마리 이하

③ · ④ (현행과 같음)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14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97 호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동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적용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등)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예우대상자 및 유가족의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해당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별천지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②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③ 「하동군 다목적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나목과 다목”을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라.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④ 「하동군 금오산어드벤처 레포츠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비고 중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⑤ 「하동군 레일바이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⑥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 중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50%	
-------------------------------------	-----	--

⑦ 「하동군 구재봉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객실요금의 50%할인(비수기주중에 한함)
-------------------------------------	------------------------

⑧ 「하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2월 14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 2398 호

하동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하동군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에 설치되고 해당 읍·면의 주민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

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 자치업무

제2장 주민자치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주민자치회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 장”이라 한다)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하여 선정하되, 특정 성 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읍·면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④ 제3항의 주민자치교육과정 이수란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 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 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3항 각 호별 예비후보 자를 5명 이내 추첨하여 순위를 정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 등 에서 2명 이상의 위원을 선정할 수 없다.

⑦ 주민자치회는 제3항의 위원과 제5항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날부터 10 일 안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⑨ 군수는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위촉한다.
- ⑩ 군수는 위원을 위촉한 경우 그 위원 명단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⑪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⑫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읍·면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6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군 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중복선정되거나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자치회장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은 감사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관한사항
5. 기타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면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3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치적 중립)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 중 연임하려고 하는 사람은 제6조제4항의 교육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선거운동을 하거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세칙) 기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하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하동군 고시 제2020 - 2호

양일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제59조 제4항에 따라 『상촌(정기룡)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상촌(정기룡)마을 만들기 사업

2. 사업의 목적

- 금남면 중평리 상촌(정기룡)마을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여, 쾌적함을 동시에 증진하고 상촌(정기룡)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향상과 정주공간 조성, 기초생활기반, 지역경관개선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3. 사업비 : 금 500백만원(국비 234, 도비 30, 군비 236)

4. 주요사업내용

- 기초생활 기반확충 : 마을회관 리모델링, 꽃내음(꽃밭)상촌 조성
- 지역소득증대 : 산딸기 소규모가공설비구축
- 지역역량강화 : 공동(홍보)마케팅 전개, 한문학/인문학 교실 운영, 실버누리 건강교실

5.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6.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1년(3년간)

※ 기타 문의사항은 하동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5-880-2517)

하동군 고시2020 - 3호

개 간 사 업 시 행 계 획 (변경) 승 인 서

사 업 시 행 자	성 명	김선*		생년월일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원목길***			
개 간 장 소	군	면		리	
	하동	청암		목계	
개 간 의 용 도	고랭지 배추 식재하여 영농하고자 함				
승 인 면 적	지 번	지 목	지 적	※ 토지 대가	
	산195-11	임	1,895㎡		
	산197-2		5㎡		
지 정 착 수 시 기	2019. 7. ~ 2020. 2. 29				
공 사 비 예 정 액	4,000만원				
승 인 조 건	개간사업 시행인가조건 18항을 부함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2020년 1월 3일

하 동 군 수

비 고 : ※는 소유자 개발시에는 기재 불요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개간승인면적	토 지 대 가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m ² 당	금액	주 소	성명	
하동	청암	목계	산195-11	임야	6,215m ²	1,895m ²					
			산197-2	임야	102m ²	5m ²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을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 당하였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하동군 고시 제2020 - 5호

개 간 사 업 시 행 계 획 (변경) 승 인 서

사 업 시 행 자	성 명	최낙*		생년월일	
	주 소	하동군 옥종면 신기동길 ***			
개 간 장 소	시·군	읍·면		리·동	
	하동	옥종		안계	
개 간 의 용 도	고구마재배				
승 인 면 적	지 번	지 목	지 적	※ 토지	
	산73-1	임	4,920㎡	대가	
지 정 착 수 시 기	2018.01.08.~2020. 12. 30				
공 사 비 예 정 액	50,000천원				
승 인 조 건	개간사업 시행인가조건 18항을 부함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함.

2020년 1월 3일

하 동 군 수

비 고 : ※는 소유자 개발시에는 기재 불요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토지표시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개간승인면적	토 지 대 가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번				m ² 당	금액	주 소	성명	
하동	옥종	안계	산73-1	임야	14,045	4,920m ²					

1. 개간사업 시행승인서에는 계획평면도를 첨부함.
2. 승인을 받은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6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 당하였거나 기타사유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즉시 승인서를 반납할 것.

하동군 고시 제2020 - 6호

하 천 점 용 허 가 증

주 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		
성명(법인명)	유태*		
생년월일 (법인번호)			
하천명칭	섬진강	하천등급	국가하천
점용장소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453(하천) * 인근지번 : 하동읍 광평리 440-8(도로)		
목적및면적	인명구조선 및 선박계류, A=54㎡		
최초허가일	2016년 12월 22일		
점용기간	2019. 12. 22. ~ 2022. 12. 21. (3년)		
허가조건	1. “붙임참조”(허가조건) 준수할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1월 7일

하 동 군 수 (인)

비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상속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 가 조 건

1. 본 공작물의 설치는 귀 기관에서 직접 감독(또는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제출한 도면 및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착수 시에는 공사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 첨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사완료시 준공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사 시행에 따른 하천의 오염이나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며,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공사 시행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을 하상 또는 고수부지 등에 적치하지 않아야 하며, 하천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우기 시 유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공사는 중지하고,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기상특보시 즉시 철거 가능)
5. 공사시행 시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을 설치(부착)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본 점용허가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시설물(제방 및 호안 등)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6. 점용허가 구간 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자 보상요구 등 모든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7. 하천점용 기간동안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하천점용으로 인한 민원발생등 공익을 위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쓰레기 및 오수 등으로 인한 하천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9.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별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0. 부득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점용공사기간 및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위 각항 및 관계법규를 위반하거나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시행 및 공공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완이나 이설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 허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20 - 12호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15.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71-14외 9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0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광포안길 19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건물번호부여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580-1, 산 109-1, 산 110-6, 545-2, 546-2, 574, 575, 86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71-14	2020 0115		2007 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1114, 951, 1116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474-24	2020 0115		2009 0302	진교면과 양보면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진교면의 "진"과 양보면의 "양"으로 도로의 진행방향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종이리 757-2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금남길 13-18	2020 0115		2007 0618	칼남재, 양지땀,원골마을을 합한 행정상의 명칭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285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배안골길 101-50	2020 0115		2007 0618	산 허리의 바위들의 배치가 배의 내부와 비슷하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1127-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삼장길 133-13	2020 0115		2008 0402	연산조때 유명한 조지서가 생장안 곳인데 지족당이 9번 장원을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산9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상덕길 46-223	2020 0115		2007 0618	상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305-3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상성길 4	2020 0115		2008 0402	상성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37-4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시장1길 22	2020 0115		2007 0618	시장이라는 지역 특성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41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상촌길 68-68	2020 0115		2008 0402	청룡과 상촌을 합성하여 청룡상촌길로 명명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102-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310	2020 0115		2007 0618	화심이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 건물번호합병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광포안길 17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광포안길 19	2020 0115	소유자 신청에 따른 건물번호 합병	2008 0402	농경지가 넓어서 살기좋은 마을이란 뜻의 광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 로명을 합성하여 광포안길로 명명	
건물 번호 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광포안길 19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광포안길 19	2020 0115	소유자 신청에 따른 건물번호 합병	2008 0402	농경지가 넓어서 살기좋은 마을이란 뜻의 광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 로명을 합성하여 광포안길로 명명	

하동군 고시 2020-15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22번길 25		
성명(법인명)	영산강홍수통제소장		
하 천 명 칭	섬진강	하천등급	국가하천
점 용 장 소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 하동읍 흥룡리 섬진강 일원 * 인근지번 : 고전면 전도리 885-10 ~ 하동읍 흥룡리 1724-5 일원		
점 용 면 적	9.0㎡		
최 초 허 가 일	2020년 01월 20일		
점 용 기 간	2020. 01. 20. ~ 2020. 10. 30. (284일)		
<p>「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01월 21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 동 군 수</p>			

하동군 고시 제2020 - 18호

도로명주소 부여 · 변경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3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66-1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1건)				

○ 도로명주소 변경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배섬길 20-8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1. 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건물번호부여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 동 사 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463-7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66-1	2020 0130		2007 0618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 라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730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정안로 528	2020 0130		2007 0618	도로구간 인근에 위치한 정안 봉이라는 산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0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282-328	2020 0130		2007 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2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1282-330	2020 0130		2007 0618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858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182	2020 0130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중+ 단성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정리 608-5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옥단로 150	2020 0130		2009 0702	행정구역명(옥중+ 단성면) 활용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등촌리 605-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덕기길 36	2020 0130		2007 0618	덕기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125-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길 14	2020 0130		2007 0618	수로왕이 칠왕자를 만나려고 왔다가 머문곳으로 범왕시를 창건하였다하여 붙여진 자연마 을이름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960-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사막1길 17	2020 0130		2011 1025	사평 사드래와 양막골의 마을 을 합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 름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 877-2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사막2길 9	2020 0130		2009 0302	사평 사드래와 양막골의 마을 을 합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 름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 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883-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길 136-8	2020 0130		2007 0618	북천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 치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 마을이름 반영	

□ 건물번호합병

업무 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이 동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 번호 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배섬길 20-8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배섬길 20-6	2020 0130		2007 0618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하여 붙여진 옛 지명에서 유래	
건물 번호 합병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배섬길 20-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배섬길 20-6	2020 0130		2007 0618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다하여 붙여진 옛 지명에서 유래	

하동군 고시 제2020-21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한태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남성길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성천리 1201번지 14호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257.00㎡		
목적	동식물관련 시설 양성화		
기간	2020년 02월 03일부터 2025년 02월 02일까지		
정용·사용의 유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제11호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실시계획 승인(인가)대상		
허가조건	1) 정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 2) 타 법령과 관련된 제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정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02월 04일

하 동 군 수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허 가 조 건

1. 점용료는 매년1회 납입고지서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양도·양수, 승계, 전매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3. 정당한 절차 없이 점용목적 및 면적이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4. 정당한 절차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축제, 식수, 기타 유수에 저해되는 시설 및 자연경관 및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와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일체 금지합니다.
6. 공익상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점용장소를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때에는 점용기간 만료30일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급성독성의 정도가 맹독성 또는 고독성인 농약과 어독성의 정도가 1급인 농약(농약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 나.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비료관리법시행령 별표 1)
 - 다.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
9. 하천,공유수면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0.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하천부속물등 하천의 유지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함.)
11.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2. 국가 및 공익상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점용면적을 가감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13. 소음, 공해 기타행위로 인하여 인근 주민(제3자 등)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합니다.
14. 현행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5. 점용을 중지하거나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16.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점용물처리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7. 원상회복면제의 신청 없이 방치되는 점용물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18. 점용물의 임대 또는 관리위탁 하여서는 안됩니다.
19. 이용객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서는 안됩니다.
20. 각 항의 위반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동군 고시 제2020 - 22호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 9. 22.>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신청인	법인 또는 기관명	
	대표자(성명) 박 순 * 외 1	생년월일(성별)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	전화번호

점용·사용허가 번호(협의·승인 연월일)

장소 악양면 입석리 949번지(연접지번 악양면 입석리 636-2)

목적 주택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교량설치)

총사업비 천원

준공내용	점용·사용시설 면적 60㎡
	공유수면 점용·사용면적 60㎡
공사기간	2018년 3월 일 ~ 2019년 12월 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조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확인을 합니다.

2020년 1월 14일

하 동 군 수 (인)

※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을 적어야 합니다.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 2020 - 00002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박순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949번지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60.00㎡		
목적	진입로 개설		
기간	2020년 01월 14일부터 2025년 01월 13일까지		
점용·사용의 유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1항 제11호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실시계획 승인(인가)대상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 2) 타 법령과 관련된 제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01월 14일

하 동 군 수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하동군 고시 제2020-28호

[별지 제5호서식]

허가번호 제 2020 - 00004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허가 대상자	성명	정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돌고지로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애치리 1188번지 15호		
면적(또는 채취량·투기량)	987.00㎡		
목적	내부도로 등		
기간	2020년 02월 10일부터 2025년 02월 09일 까지		
점용·사용의 유형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1항 제11호		
실시계획 승인 또는 신고대상 여부	실시계획 승인(인가)대상		
허가조건	1) 점용 허가지역 외 구거시설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제3자에 대하여 피해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 2) 타 법령과 관련된 제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합니다.

2020년 02월 10일

하 동 군 수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하동군 공고 제2020 - 11호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안 제정 입법예고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 명 :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안

2. 제안 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강화

3. 주요 내용 :

가. 규칙 제정 목적 및 설치(안 제1조, 제2조)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다. 위원 해촉·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마. 위원회 심사·의결 및 의견 청취·자료요청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바. 간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운영세칙 및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1월 28일까지 하동군(주민행복과장, 전화 055-880-2334, FAX 055-880-2349, e-mail ahonest3@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안(별표 포함)
- 2.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하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하동군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 하동군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제9조 관련)

항목	심사자료	세부 기준	배점
계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요원의 윤리성 및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행정처분 관련 감점기준 (최근5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부당 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위반(예결산 미승인 포함), 평가·조사거부등으로 인한 행정처분등이 없는 경우	
		- 영업정지일이 총 91일 이상인 경우: 감점 15점 - 영업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감점 10점 - 영업정지일 총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5점	
		-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회 이상): 감점 15점 -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1회): 감점 10점	
		- 재무회계 및 운영관리전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감점 10점	
서비스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사업계획, 등 운영규정 등	<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자원관리의 체계성 (20점)	사업계획, 등 시설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보건의로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input type="checkbox"/>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인력관리의 체계성 (20점)	사업계획 및 인력현황 등	<input type="checkbo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input type="checkbox"/>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input type="checkbox"/>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8. 12. 11.>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2. 11.>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신설 2018. 12. 11.>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 [시행일 : 2019.12.12.] 제3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1., 2014. 2. 14., 2016. 11. 7., 2019. 6. 12.>

-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 각 1부
-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9., 2015. 12. 31., 2019. 10. 24.>

- 1.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3. 법률 제15881호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간주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6. 12.>

- 1.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④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에 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상담할 수 있으며,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9. 6. 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9. 6. 12.>

[제11조에서 이동 <2008. 6. 11.>]

[시행일 : 2019.12.12.] 제23조

하동군 공고 제2020 - 102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근거하여 과태료 규정 삭제
 - 나.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범죄예방 전문가인 경찰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3. 주요 내용
 - 가. 상위법에 위임없는 과태료 규정 삭제 제18조,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 나. 공중화장실 비상벨, CCTV 등 군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에 관한 조항 신설(제5조 6호)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하동군(참조 : 환경보호과, 전화 880-2585, FAX 880-2569, lalala03@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규칙) 제 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제5조(설치기준)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u></p>
<p><u>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u></p>	<p><u><삭제></u></p>

하동군 공고 제2020 - 142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 이유 : 환경미화원들의 어깨 걸림, 허리 통증 등 질환예방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100L 제작·중단하고 75L를 사용함에 따라 근무환경 개선
3. 주요 내용 :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 12호 75L 추가 및 100L 삭제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하동군(참조 : 환경보호과, 전화 880-2585, FAX 880-2569, lalala03@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별지서식 제12호 수정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2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공급수불부(제5조 관련)

봉투판매소		상 호								지 정 번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전 화 번 호				
구 분		공 급 내 역								수 납 내 역				
월일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공급액	수납액	잔액	확인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하동군 공고 제2020 - 144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가. 환경미화원들의 어깨 결림, 허리 통증 등 질환 예방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100L 제작·중단하고 75L를 사용함에 있어 근무환경 개선
 - 나.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 참여 및 영농폐기물·재활용품 등 수거한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소화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대형폐기물로 분류·처리하는 근거 마련
3. 주요 내용
 - 가.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7]75L 추가 및 100L 삭제
 - 나.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재정지원) 신설
 - 다.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에 폐소화기 추가(별표6)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2월 24일까지 하동군(참조 : 환경보호과, 전화 880-2585, FAX 880-2569, lalala03@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폐기물의 불법처리 감시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 환경보전·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재활용품 등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 활동비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대형폐기물, 건물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제16조 및 제18조 관련)

품 명	규 격	처리비	품 명	규 격	처리비			
냉장고	500ℓ이상	8,000원	소 파	대형 6인용	8,000원			
	300ℓ이상	6,000원		소형 4인용	5,000원			
	300ℓ미만	4,000원	책 상	양수, 대형	5,000원			
43인치 이상	5,000원	편수, 소형		4,000원				
텔레비전	12인치 이상	3,000원	식 탁	6인용 이상	5,000원			
	세탁기	모든규격		4,000원	4인용 미만	4,000원		
에어콘			264㎡형 이상		8,000원	서 랫 장	모든규격	3,000원
			66㎡형 이상		5,000원		신 발 장	모든규격
가스오븐 렌지	높이 1m 이상	4,000원	책 장	모든규격	3,000원			
	높이 1m 미만	2,000원		침 대	2 인 용	8,000원		
탈수기	모든규격	2,000원	피 아 노		어프라이그랜드	1 인 용	6,000원	
				폐소화기		모든규격	3,000원	10,000원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2,000원	15,000원					
장농	120cm당 1쪽	15,000원	건설폐기물	톤 당	22,500원			
	90cm당 1쪽	10,000원	생활폐기물	4.5㎡(청소차론 온박스1대)	69,200원			

※ 주)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하며 그 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 밀도를(0.45TON/㎡) 적용하여 수수료 부과

[별표 7]

쓰레기규격봉투 판매가격(제18조와 관련)

용 량	일 반 용 봉 투 공 급 가 격		
	공 급 액	관 매 이 익	봉투 판매 가격
5ℓ	91원	9원	100원
10ℓ	182원	18원	200원
20ℓ	364원	36원	400원
50ℓ	819원	81원	900원
75ℓ	1,229원	121원	1,350원
P·P포대	2,093원	207원	2,3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2010.6.30.> <u><신 설></u></p>	<p>제20조(재정지원) ① <u>군수는 폐기물의 불법처리 감시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 환경보전·감시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u></p> <p>② <u>군수는 영농폐기물, 재활용품 등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 활동비 등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u></p>

하동군 공고 제2020 - 202호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2019. 7. 1. 하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종합상황실장 변경
3. 주요 내용 : 제5조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3월 3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총괄과, 전화 880-2265, FAX 880-2249, e-mail qkrwldud15@korea.kr)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④ (생 략)</p> <p>⑤ 종합상황실장은 <u>기획조정실장</u> 이 되고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종합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p> <p>⑥ · ⑦ (생 략)</p>	<p>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u>기획행정국</u> <u>장</u>----- ----- -----.</p> <p>⑥ · ⑦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공고 제2020 - 23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 제5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하동군수

읍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비 고
		최소기준	15/100	
합 계	41,627		6,245	- 5개 이상의 읍·면에서 읍·면별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 총수의 15/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최소기준 산정 · 기본은 읍면별 총수 * 15/100 · 그 총수가 1만분의 5 미만인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5로 한다. $(5 \div 10,000) \times 41,627$ $= 21$ 명(우리군 없음) - 1만분의 100을 초과하 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 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div 10,000) \times 41,627$ 명 $= 417$ 명
하동읍	8,836	417		
화개면	2,880	417		
악양면	3,303	417		
적량면	1,886	283		
횡천면	1,830	275		
고전면	2,176	327		
금남면	3,455	417		
금성면	2,980	417		
진교면	5,452	417		
양보면	1,749	263		
북천면	1,729	260		
청암면	1,362	205		
옥종면	3,989	417		

2. 하동군의회

선거구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비 고
지역선거구	읍면		최소기준	20/100	
가 선거구	합 계	8,069		1,614	- 1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8,069명 = 81명
	화개면	2,880	81		
	악양면	3,303	81		
	적량면	1,886	81		
나 선거구	합 계	12,842		2,569	- 1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12,842명 = 129명
	하동읍	8,836	129		
	횡천면	1,830	129		
	고전면	2,176	129		
다 선거구	합 계	11,887		2,378	- 1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11,887명 = 119명
	금남면	3,455	119		
	금성면	2,980	119		
	진교면	5,452	119		
라 선거구	합 계	8,829		1,766	- 2개 이상의 면별로 각각 최소기준 이상의 서명과 청구권자총수의 20/100이상 서명을 받아야 함 - 1만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 서명을 받아야 할 서명인 수는 1만분의 100으로 한다. (100 ÷ 10,000) × 8,829명 = 89명
	양보면	1,749	89		
	북천면	1,729	89		
	청암면	1,362	89		
	옥종면	3,989	89		

2020년 1월 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20 - 23호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하동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19년 12월 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조례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기관명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권자 총 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총수의 1/50 이상)	비고
하동군	41,627명	833명 이상	

2020년 1월 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20 - 23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수 공표

주민투표법 제9조 및 하동군주민투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주민투표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41,627명 (내국인 41,600명 / 외국인 27명)	5,947명 이상

- ▲ 내국인 : 2019년 12월 31일 현재 하동군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 외국인 : 2019년 12월 31일 현재 하동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자
- ▲ 하동군주민투표조례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한다.

2020년 1월 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공고 제2020 - 41호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변경) 공고

하수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020. 1. 9.

하 동 군 수

1. 공공하수도 현황

○ 기본현황

처리장명	위 치	시설용량(m ³ /일)		처리방식	처리구역 (ha)	처리구역 행정인구 (인)	하수배제 방식
		당초	변경				
범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동군 고전면 범아리 425-9 외 3필지	40	50	JSBR 공법	11.5	181	분류식

○ 설계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구 분	BOD	COD	SS	T-N	T-P	대장균군수	비고
설계유입수질	195.7	72.3	173.4	45.4	4.4	150,000	
설계방류수질	3.5	10.0	3.5	8.0	0.7	30	

○ 방류수계

처리장명	방 류 수 계
범아 소규모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고전천 → 섬진강 하류

3. 변경사유

- 재원협의 및 인가후 변경된 시설용량 반영

4. 사용개시(공고)일

- 2020. 1. 9.

5. 공고기간

- 2020. 1. 9. ~ 2020. 1. 22.(14일간)

6. 기타사항

- 하수처리구역 내 오수발생(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하동군하수도사용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 하수처리구역 열람(현황 및 도면)과 기타 사항은 하동군청 수도사업과 하수도부서(담당 ☎055-880-26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공고 제2020-42호

압류자동차 인터넷 공매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자동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1. 공매에 부치는 사항

공매물건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가(원)	비고
55보9511	QM5	2011	3,500,000	

2. 공고등록 및 입찰등록기간 : 2020년 1월 10일 ~ 2020년 1월 20일(23:00)

- ※ 입찰등록기간내에 입찰서 작성 및 입찰보증금 납부
-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기한은 등록마감일 까지
- ※ 입찰서작성 및 제출은 입찰기일 내 제출

3. 입찰장소 : (주)태웅정보 서비스 시스템(<http://www.goodinfocar.com>)

4. 입찰결과 발표 : 2020년 1월 21일(14:00), (주)태웅정보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5. 입찰방법

①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받고자하는 은행명 및 계좌번호, 매수하고자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 등을 입력하고 입찰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847-01-014832 (예금주 : 하동군수)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③ 입찰등록기간이 완료되면 곧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 입찰자를 정하며 최고의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컴퓨터가 자동추첨을 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④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결된 후 7일 이내에 반환 청구한 계좌로 반환합니다.

⑤ 1회 공매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재공매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 지방세징수법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매수인이어야 합니다.

7. 낙찰대금 납부

- ① 낙찰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7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우리자치단체에 귀속되며 해당차량은 제공매 조치합니다.

8. 기타

- ① 공매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공부열람 및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낙찰된 후 차량인수에 필요한 제반사항(배터리, 오일, 연료 등)을 낙찰자 본인이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②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 후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및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 ③ 매각진행중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 등이 제비용 모두를 납부하고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매체결전 인수 가능하며 지방세징수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차량에 대한 공매는 취소됩니다.
- ④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비용 등
 -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등 말소등록세(건당 15,000원)는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공단의 압류는 등록세가 비과세됨)
- ⑤ 차량인수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
 - 본인 :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개인사업장대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장
 - 개인사업장의 대리인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법인낙찰자의 대리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⑥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9일

하 동 군 수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0 - 1호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채용시험 계획 공고

하동군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월 10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홍보(취재·보도) 전문가	지방일반임기제 7급상당(지방행정주사보)	1명	2년	기획예산과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연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홍보(취재·보도)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 홍보 보도자료 수집·작성 및 테마별 홍보 - 기획홍보물 작성 및 배포 - 하동소식지 편집 및 발간 등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자격요건(필수)
홍 보 (취재·보도) 전문가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국어국문학 등 인문계열 ▶ 직무분야 : 언론·방송기관 취재·편집 관련분야
	우 대 조 건
	1.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취재·보도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1항 4호)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홍보 분야 (3년이상 경력)**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상당)	60,139천 원	42,713천 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20. 1. 10(금)	'20. 1. 10. ~ '20. 1. 20.	서류전형	-	'20. 1. 21.
		면접시험	'20. 1. 22.	'20. 1. 23.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20. 01. 10. ~ 01. 20.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7급 7,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관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3.5cm×4.5cm)

○ 응시수수료 : 7급 상당 - 7,000원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기획예산과(☎ 055-880-2042)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붙임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Blank area for self-introduction.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Blank area for job performance plan.

☞ 면접심사 시 활용됨

<붙임 4>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경력 사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운행차량	상근 또는 상근아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2호

- 2020년 제2회 하동군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하동군에서는 2020년 제2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월 10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9급 상당)	4명	2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연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무분야	인원(명)	직급	직무내용	비고
간호사	3	시간선택제 임기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환자 등록,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서비스 치매조기검진사업(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의뢰) 치매예방, 인지강화교실, 쉼터운영 및 가족교실운영 치매인식개선사업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수행 	주35시간 (주5일) 09:00~17:00
사회복지사	1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자격요건(필수)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간호사	1. 「의료법」 제2조의2,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 2.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조건	
1. 치매안심센터 근무 유경험자 2. 보건·의료분야 또는 노인복지 경력자 3.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가능한 자 4.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가능한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보건, 민간기관 등에서 치매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보수 수준

- 산출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별표13
- 기 본 급 : 일반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의 연봉상한액(46,456천원)을 기준, 업무성격을 감안,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 업무성격 : 상한액의 50%적용
 - └ 근무시간 : 87.5%적용(주35시간 근무)

- 산출내역 : 46,456천원×50%(업무성격)×35/40=20,325천원
【연기본급 20,325,000원/월기본급1,693,750원】

- 2019년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표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9급상당	46,456천원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20. 1. 10(금)	'20. 1. 10. ~ '20. 1. 20.	서류전형	-	'20. 1. 22.
		면접시험	'20. 1. 29.	'20. 1. 30.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20. 01. 10. ~ 01. 20.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8급 이하 5,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관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3.5cm×4.5cm)

- 응시수수료 : 8급 이하 - 5,000원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55-880-6852)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2020년 제2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			하동군 수입증지 6,7급(7,000원) 8,9급(5,000원)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용시험)		
응시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		
2020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하동군 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응시원서는 향후 기능시험 및 면접시험에 사용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붙임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시 활용됨

<붙임 4>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경력 사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운행차량	상근 또는 상근아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하동군 공고 제2020-21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하오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13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 나. 사업명 : 하동 도시계획도로[중로3-10]개설공사
- 다. 위치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173-2 ~ 하동읍 비파리 760
- 라.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개설 L = 0.2km
- 마.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2. 보상대상 : 토지(19필지, 3,165㎡) 및 물건(총 36건) 등
※ 토지 등의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하며, [열람장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3. 공고기간 : 2020.01.13. ~ 2020.01.28.(16일간)

4. 열람기간 : 2020.01.13. ~ 2020.01.28.(16일간)

5. 손실보상 계획

- 가. 협의 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 나. 협의 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8)
하동읍 하동읍 군청로 23(군청 본관 1층)
- 다. 보상 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라.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
- 마. 구비서류
 - ①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2통
 - ② 주민등록초본 1통(전 주소 이력 포함)
 - ③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 ④ 계약서, 청구서,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 승낙서
 -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사항

- 가.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 나. 편입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에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 다.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이 공고 후에 설치하는 지장물, 수목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 열람장소 및 문의처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8)

보상금 지급계획조서(지장물)

연번	소재지 (하동군)	지번	물건의류	구 조 및 규 격	수 량	평 가 가 액		보상금액	소유자	
						평균단가			주소	성명
						단가	금액			
1	하동읍 읍내리	193-2 193-4	담장	벽돌철재1.5* 15	22.5 m ²	145,000	3,262,500	3,262,500		재단법인 원불교
			바닥	보도블럭	4 m ²	식	100,000	100,000		
			청목	20년생	1 주	일괄	265,000	265,000		
			편백나무	R15	1 주	↑	↑	↑		
2	하동읍 읍내리	193-3	울타리	철재 20*1.8	36	30,000	1,080,000	1,080,000		강*순, 박*균, *훈
			출입구	철재7*2 기초포함	1 식	식	1,250,000	1,250,000		
			사무실	컨테이너3*9	1 식	일괄	1,220,000	1,220,000		
			물품이 설비	-	1 식	↑	↑	↑		
			바닥	콘크리트	100 m ²	18,000	1,800,000	1,800,000		
3	하동읍 비파리	760	담장	블록 1*12	1 식	식	480,000	480,000		강*중
4	하동읍 읍내리	194-2	복숭아 나무	R10 지지대포함	12 주	일괄	1,410,000	1,410,000		강*중
			암반관 정	장옥포함	1 식	식	7,350,000	7,350,000		
5	하동읍 읍내리	173-4	가로등	철재 H:4	2 식	일괄	1,300,000	1,300,000		정*근
			가로등	철재(소형)	1 식	↑	↑	↑		
			간판	철재1*4 H:4	1 식	식	600,000	600,000		
			조경석	이설	1 식	식	925,000	925,000		
			바닥	콘크리트 12*20	240 m ²	24,500	5,880,000	5,880,000		
			화단	자연석 4*12	48 m ²	39,000	1,872,000	1,872,000		
			화단	블록 1*10	1 식	식	300,000	300,000		
			소나무 (조형)	R25	1 주	일괄	1,858,000	1,858,000		
			소나무 (조형)	R8	1 주	↑	↑	↑		
			소나무	R20	1 주	↑	↑	↑		
			소나무	R8	1 주	↑	↑	↑		
			소나무	R10	3 주	↑	↑	↑		
			소나무	R5	1 주	↑	↑	↑		
			영산홍	3년생	1 주	↑	↑	↑		
			목련나무	R3	1 주	↑	↑	↑		
			블루베리 나무	5년생	1 주	↑	↑	↑		
			동백나무	R15	1 주	↑	↑	↑		
			동백나	R3	1 주	↑	↑	↑		

			무							
			동백나 (조형) 무	R20	1	주	↑	↑	↑	
			동백나 무	R5	1	주	↑	↑	↑	
			동백나 무	R6	1	주	↑	↑	↑	
			황칠나 무	R15	1	주	↑	↑	↑	
			마삭줄 (조형)	R5	1	주	↑	↑	↑	
			마삭줄 (조형)	R2	9	주	↑	↑	↑	
	합 계							30,952,500	30,952,500	

[하동도시계획도로(중로3-10호선) 개설공사]보상금 지급계획

연번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편입면적(m ²)	감정평가	보상금액	소유자	
					평균		주소	성명
1	하동읍내리	173-2	대	170	607,500	103,275,000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104-5	서*경
2	하동읍내리	173-4	대	165	424,000	69,960,000	하동군하동읍굴다리2길49	정*근
3	하동읍내리	173-3	답	164	317,000	51,988,000	하동군하동읍 산복2길10,101동204호(녹차마을)	남*태
4	하동읍내리	174-1	답	110	315,500	34,705,000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18	조*수
5-1	하동읍내리	174-2	답	228*1/2	315,500	35,967,000	광양시진동2길13,302동709호 (중동,대광로제비양3차아파트)	이*호
5-2	하동읍내리	174-2	답	228*1/2	315,500	35,967,000	광양시 진상면 황죽리 58	이*근
6	하동읍내리	174-3	답	172	315,500	54,266,000	하동읍 광평리 251-2	추*기
7	하동읍내리	194-2	답	171	321,000	54,891,000	하동군하동읍광평리254-1	강*중
8	하동읍내리	194-1	답	161	315,500	50,795,500	하동군하동읍 나루터길 21-4	이*순
9-1	하동읍내리	193-3	답	113*3/7	332,500	16,102,50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연화길 17	강*순
9-2	하동읍내리	193-3	답	113*2/7	332,500	10,735,000	거제시 아양동 13	박*규
9-3	하동읍내리	193-3	답	113*2/7	332,500	10,735,000	경상남도 진주시 새평거로 25, 108동 2402호 (평거동, 더 퀸즈웰가)	박*훈
10	하동읍내리	193-2	종교 용지	16	342,500	5,480,000	이리시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11	하동읍내리	193-4	종교 용지	15	342,500	5,137,500	이리시 신용동 344-2	재단법인 원불교
12	하동읍광평리	2-3	답	370	321,000	118,770,000	하동군하동읍중서2길1	이*성
13-1	하동읍광평리	2-8	답	476*992 /4198	306,000	34,418,940	하동군 황천면 구학길 48	김*인
13-2	하동읍광평리	2-8	답	476*661 /4198	306,000	22,934,400	진주시진양호로239번길13 평거하우스스토리203동302호	김*인
13-3	하동읍광평리	2-8	답	476*446 /4198	306,000	15,474,640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10 4층	김*인
13-4	하동읍광평리	2-8	답	476*209 9/4198	306,000	72,828,000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268-6	최*순
14	하동읍광평리	265-2	철도 용지	402	평가외	평가외		국(국토 교통부)
15	하동읍광평리	80	철도 용지	83	평가외	평가외		국(국토 교통부)
16	하동읍광평리	6-1	답	48	204,000	9,792,000	하동읍 광평리 104-1	이*자
17	하동읍비파리	743	답	280	203,000	56,840,000	하동군 화개면 진목길 15	이*재
18	하동읍비파리	760-4	대	8	259,000	2,072,000	하동읍 광평리 254-1	강*중
19	하동읍비파리	760	대	13	259,000	3,367,000	하동읍 광평리 254-1	강*중
	합계					876,501,480		

화개면 공고 제2020 - 6호

2019년추기 및 2020춘기 산불감시원 채용공고(2차)

화개면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한 2019 추기 및 2020년 춘기 산불감시원 추가 채용에 따른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4일

화 개 면 장

I 선발개요

- 선발인원 : 1명(기동 1명)
- 근무기간 : 2020. 1. ~ 2020. 5. 15.
 - 예산형편 및 기상여건과 감시원 종별에 따라 사역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종사업무
 - 산불감시, 산불진화,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 생활가시권 및 도로변 덩굴류제거
 - 산불예방계도 및 산불발생요인 사전제거
 -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통제
 - 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 불놓기 행위 단속
 -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공동소각 참여
 - 산림훼손, 도남벌, 수목절취 등 산림내 불법행위 감시
 - 기타 산불방지 및 산림과 관련된 현장업무보조 등
- 근무조건
 - 인건비 : 매 익월초 지급
 - 68,720원/일 (주차수당 68,720원/주, 연차수당 68,720원/월)
 - 근무시간 : 1일 8시간(10~19시), 주5일 근무

- 지역실정 및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적 조정 운영 가능
- 산불발생 시는 진화완료시까지, 우천시 휴무
- 야간 불특정시간대 비상소집 다수
- 근무장소 : 해당 읍면 감시지역, 관내 산불발생 지역
- 기타
 - 4대보험 의무가입(건강, 국민, 고용, 산재)
 - 품위손상행위, 산불발생 지연보고,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등 사유발생시 사역해제 및 추후 지원불가

II 선발기준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연령 : 공고일 현재 만20세이상 읍·면 실정에 맞게 선발
- 산불진화작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
- 운전면허와 차량(본인 명의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보유 기동력이 있는 자
- 상시근무 가능자 (겸직 불가)
- 화개면 관내 지리에 능통한 자

우대 대상자

- 40세 이하인 자
- 세대주이고 부양가족이 많은 자
- 산불유공 표창자 등

지원자격 제한(접수불가)

- 타 직업에 종사하여 정기적 수입이 있는 자
- 고혈압(150/110mmHg 이상), 당뇨(150mmdl 이상)인 자
- 산불감시 유경험자이나 불성실 근무사실로 사역해제 된 적이 있는 자
- 기동력이 없는 자(본인 명의 차량 또는 오토바이 미보유, 무면허)

- 1세대내 1인만 지원가능
-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거부자 및 흡연자

III 지원접수 등

○ 접수기간 : 2020. 01. 14(화) 09:00 ~ 2020. 01.22(수) 18:00까지

※ 토·일요일 제외

○ 접 수 처 : 하동군 화개면 산업경제담당부서(☎055-880-6062)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는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서류별 각 1부 씩 제출)

- ①지원서 ②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서 ▶ 공고문 첨부 서식으로 작성
- ③주민등록등본 ④차량(이륜차)등록증 ⑤재산세납부증명서
▶ 면사무소에서 발급
- ⑥신체검사서 ▶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발급
- ⑦운전면허증 ▶ 원서접수시 지참

○ 표창장 등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증빙서류(사본) 각1부 : 해당자에 한함

★ 1차 선발시 서류 제출자 : 기존 신청서류로 같음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 기간 내 선발인원 1명 미만으로 지원 접수 시 모든 선발 일정을 취소하고 재공고 함.**

□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합격자 통보 : 2020. 01. 23(목) 예정

○ 2차 체력테스트 및 면접 : 2020. 01. 29(수) 예정 - 1차합격자에 한함

- 시간 및 장소는 1차합격자 통보 시 병행 통보

- 채용과정 및 상황에 따라 면접은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통보 : 2020. 01. 30(목)

○ 합격자 유선 및 SMS 발송 연락

○ 채용과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선발된 후 신체검사서와 달리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

- 서류심사+ 면접(50%), 체력측정(50%)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동점자 발생 시 연소자나이가 어린 자 - 체력측정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IV 특기사항

- 공개선발 : 이장회의 개최 등의 방법으로 선발계획 최대한 전파
- 심사배점표(별도자체선정) 적용 상위 순위자 선발
- 산불감시 유경험자 중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3~5점의 범위내 면접점수에서 감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개면 산업경제담당(☎055-880-6062)으로 문의바람

※ 붙임

- 산불감시원 선발지원서 1부
-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서 1부
- 각서 1부
- 근로계약서 1부
- 서류심사, 기초체력테스트 배점표 2부

붙임 1.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원) 선발지원서

접수번호 :

성명	여) (남 · 주민등록번호	주	민	등	록	번	호	-
주소				전화번호	휴대 :	자택 :		
산불감시 근무경력	근무기관	직무구분 (진화,기동,초소 등)			근무기간			
					. . . ~ . . .			
					. . . ~ . . .			
					. . . ~ . . .			
흡연여부	여 · 부			자동차·이륜차 보유여부		여 · 부		
가족관계	세대주 여 · 부			부양가족수		명		
병력관계	지병 유 · 무			병명				
복장치수	상의 :			신발치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차량(이륜차)등록증 사본 1부 3.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서 1부(신분증사본첨부) 4. 신체검사서(보건소 등에서 실시한 검사서) 1부 5. 재산세 납부증명서 1부 6. 표창장 등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7. 기타 증빙서류(사본) 각1부 : 해당자에 한함							
선발된 후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소정의 응시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선발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산불감시원으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지원자 : (인)

붙임 2.

「산불감시원 위치관리 서비스」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1. 하동군·(주)에넥스텔레콤은 「산불감시원 위치관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알게되는 위치조회동의자의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를 동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집·이용·제공합니다.
- 2. 하동군·(주)에넥스텔레콤은 법규, 공공질서, 도덕, 상도의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목적으로 위치조회동의자의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지 아니합니다.
- 3. 「산불감시원 위치관리 서비스」에서 위치조회자는 위치조회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산불감시원 위치관리 서비스」에서 위치조회동의자는 위치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제공받은 위치조회자는 「산불감시원 위치관리 서비스」의 제공목적만으로 이용합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리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산불감시원 위치관리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를 하동군·(주)에넥스텔레콤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2020 년 월 일

위치조회자

기 관 명 : 하동군

직급/성명 : (인 또는 서명)

전화번호 :

위치조회동의자 (피조회자) :

*제출서류 : 위치조회자 신분증 사본 1매

위치조회동의자 신분증 사본 1매.

하 동 군 수 귀 하

(주)에넥스텔레콤 대표이사 귀하

각 서

- 산불감시복(조끼), 모자, 완장 등을 착용하지 않거나 등짐펌프 및 갈퀴 등 진화장비를 휴대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 구두, 슬리퍼 등을 착용하여 산불예방활동 및 진화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근무기강을 문란케 할 경우
- 근무시간 중 도박·음주 등 품위손상행위, 산불발생 지연보고,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거부, 흡연할 경우 ⇒ 즉시 사역해제
- 관계공무원 등이 무전으로 호출할 때 응답이 없을 경우
- 산불진화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기피하거나 주위에서 배회하는 경우
- 산불예방활동을 소홀히 하여 책임담당구역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거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불성실 근무 사실로 지탄의 대상이 될 경우 즉시 사역해제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으며, 근무시간중 차량사고 발생시 어떠한 경우에라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0. 1. .

성명 : (인)

하동군수 귀하

근 로 조 건(산불감시원)

근로기준법 제17조 규정에의거 고용주(읍·면장)를 "갑" 이라하고, 일시사역인부(근로자)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조건을 제시 합니다.

1. (갑) 사용자: 00읍·면장 (인)
 (을) 근로자 · 성 명: (인)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2. 근로기간: 2020. 1. ~ 2020. 5. 15.
 (예산 및 기상사정에 따라 사역기간 조정가능)
3. 근무장소: ○○읍·면 관내산림 및 산림연접지
4. 업무내용: 산불방지 계도, 순찰 및 단속, 산불요인제거(덩굴류 제거) 등
 산불예방활동, 산불진화 참여(육체적 노동을 포함한 업무범위)
5. 근로시간: 10:00 ~ 19:00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며,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휴게시간 12:00-13:00)
6. 근무일: 주 5일근무 원칙
 ※ 「갑」의 사정 또는 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갑」이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음.
7. 임금 등
 - 일급은 초소, 기동 감시원: 금68,720원
 - 휴무일은 매주 "월~금요일" 중 1일을 정함
 ※ 읍면에서 감시원 휴무일이 편중,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
 - 주차수당은 1주간(5일 근무시) 소정근로일 개근시 유급이며, 수당은 일급과 같음
 - 휴일근로(일요일) 및 연장근로 시 일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 임금의 지급은 매월말일 기준으로 기준일 이후 7일 이내에 지급함.
 - 임금지급 방법은 "을"의 통장계좌에 계좌 입금함.
8. 기 타
 - "갑"은 "을"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 ① 산불감시활동을 태만히 하여 책임담당구역에서 산불 발생
 - ② 특별한 이유 없이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산불신고 태만 (단 단말기 미 지급자 제외)
 - ③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 ④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경우
 - ⑤ 폭행·욕설·폭언 등 동료 또는 지역주민과 마찰
 - ⑥ 음주·도박 등 공공질서위반 행위
 - "을"은 "갑"에게 지급 받은 단말기 의한 근무위치, 근무실태 등 확인 받는 것을 동의 하는 것으로 본다.
 - "갑"과 "을"은 업무상 필요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출동에 대하여 동의하며,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에 상호간 합의한다.
 - 기타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근로조건은 관련법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서류 심사 배점표(예시)

□ 지원자 성명 :

심사항목	점수기준	배점	점수
기본요건 (지원자격 여부)	공고일 현재 화개면 주소	적합/부적합	
	연령기준('55.1.1~'98.12.31)	적합/부적합	
	운전면허와 차량소유 여부	적합/부적합	
	3년 이내 2년 이상 산불감시원 여부 등	적합/부적합	
	건상상태	적합/부적합	
	겸직여부	적합/부적합	
연령(20)	만20~40세	20	주민등록 등본 기준
	만41~50세	15	
	만51~60세	10	
	만61세 이상	5	
세대주 여부 등 (15)	세대주+ 부양가족 3명 초과	15	
	세대주+ 부양가족 3명 이하	10	
	세대주 아님	5	
재산정도(20)	재산세 15,000원 미만	20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준
	재산세 15,000~30,000원 미만	15	
	재산세 30,000~50,000원 미만	10	
	재산세 60,000~90,000원 미만	5	
	재산세 90,000원 이상	0	
수상 및 반장경력 등 (15)	산불유공 군수표창 이상 수상자	10	
	반장(조장)으로 근무한 경험<5개월이상>	5	
체력테스트(30)	상대평가	30	
합계(100)		100	

※ 참고사항

- 읍면 평가기준에 따라 위의 사항이 변경 될 수 있으나, 당연 제외 사항은 서류전형시 반드시 적용하여 추천, 동점자는 연령이 적은 자 및 생활수준 감안하여 처리

기초 체력테스트 배점표(예시)

▶ 등짐펌프 15리터 메고 400미터 달리기 (상대평가)

등 급	점 수	비 고
1등 ~ 2등	30	등급별 5점차
3등 ~ 4등	25	
5등 ~ 6등	20	
7등 ~ 8등	15	
9등 ~ 10등	10	
11등 ~ 12등	5	
12등 미만	0	
3분 초과자	0	
400m 완주 포기	선발 제외	

※ 위 사항은 참고사항이며 읍면 실정에 맞게 체력 검정 실시

하동군 공고 2020 - 66호

2020년도 명예퇴직 시행 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지급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5일

하 동 군 수

1. 계획인원 : ○○명

2.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기간 및 퇴직 예정일

명예퇴직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2. 15. ~ 2. 28.	3. 31
5. 15. ~ 5. 31.	6. 30
8. 15. ~ 8. 31.	9. 30
11. 15. ~ 11. 30.	12. 31

※ 단, 위 기간 이외에 명예퇴직(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 예정일 1개월전 신청서 제출 및 인사부서장과 사전 협의.

나. 명예퇴직수당 신청대상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다. 특별승진 :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아닌 때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수시 명예퇴직의 경우 에도 특별승진

임용

(단, 지방공무원법 등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 대상자에 한함)

라. 결정절차

① 명예퇴직 신청(해당공무원)

-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1호서식]과 명예퇴직원[별지2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② 명예퇴직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즉시 결정통지)

③ 사직서 제출(신청공무원)

④ 명예퇴직 수당 지급(자치단체장)

3.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심사

가. 대상자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함

- ①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③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④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⑤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나.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결정은 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 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

- 상위계급의 공무원
- 장기근속 공무원

4. 대상자 심사 결정 및 통지

가.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하동군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

나. 명예퇴직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즉시 소속부서의 장 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5. 명예퇴직 수당 지급

가.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퇴직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당해 예산확보 등을 고려, 지급시기 조정)

나. 지급방법 : 계좌입금

6. 기타사항

가. 부서의 장은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 명예퇴직원 작 성여부와 대상자 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별지 제1호서식] <다른조례개정 2016.1.1.규1143>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제8조에 따름
------	-----	--

신청인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④ 직급·계급·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신청인 기재란	⑤ 성명	⑥ 생년월일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 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소속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담당관 (인)
소속기관 기재란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 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 선고형:)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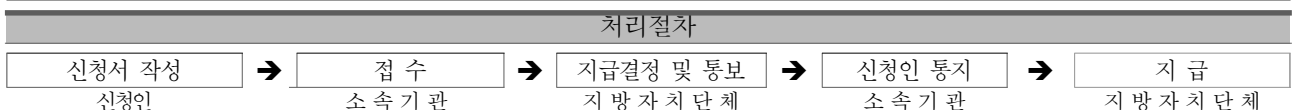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적습니다.
 -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⑩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 · 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 · []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공고 제2020 - 68호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하동군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체류형 관광산업 확대를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행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하 동 군



1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20. 1. 15. ~ 예산 소진시 까지 ※ 제외기간 : 3. 15~ 4. 15
- 지원대상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지원근거 :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지원조건
 - 1) 관내 당일 관광 또는 숙박이 포함된 여행 일정을 하동군(관광진흥과)에 사전 통보하여 협의가 된 여행업체(학교)로서,
 - 2) 타 지역 내국인·외국인 단체관광객(내국인 20인, 외국인 10인이상), 기차여행(2인이상), 항공관광(5인이상) 유치여행사로 아래 조건의 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 관내에 소재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관광숙박업소
 - 공중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업소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
 - 관내에 소재한 음식업소
- ※ 내·외국인 동반인 경우 내·외국인 총원 20인 이상인 경우에 각각 기준에 따라 지급
- ※ 기차관광의 경우 관내 기차역을 통해 하동군 관내를 관광하는 상품에 해당하며

차량비 지원은 하동군 관내에 소재한 버스, 택시 업체 이용 시 지급

※ 숙박비와 차량비는 중복지급 불가

※ 축제참가 지원비는 지원기준 충족 시 숙박비 또는 차량비와 중복지급 가능

3) 관광지(시설) 및 숙박시설 확인

· 숙박지원 : 관내 <유료관광지(시설) 2개소 + 식당 2식 이상 + 숙박 1박 이상>

· 차량지원 : 관내 <유료관광지(시설) 2개소 + 식당 1식 이상>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첨부(간이영수증 불가)

○ 지원기준 및 지원액

가. 숙박비 지원

구 분	지원기준	지원규모(1인당) (원)		지원조건
		1박	2박이상	
내국인 단체	20명 이상	10,000	15,000	유료관광지(2), 음식(2)·숙박업소(1) 이용
외국인 단체	10명 이상	15,000	20,000	

나. 차량비 지원

구 분	지원기준	지원규모 (원)	지원조건	
버스 관광객	20인 이상	300,000 (1대당)	유료관광지(2), 음식업소(1) 이용	
	30인 이상	400,000 (1대당)		
기차 관광객	일 반	2인 이상		8,000 (1인당)
	관 광 택 시	2인 이상		10,000 (1인당)
	버 스	20인 이상		400,000 (1대당)
항공 관광객	5인 이상	10,000 (1인당)		

다. 축제 참가 지원

구 분	지원기준	지원규모 (원)	지원조건
지정 축제 참가 지원	10인 이상	5,000 (1인당)	숙박비, 차량비 중복지원 가능

※ 지정 축제(하동야생차문화축제 / 섬진강문화재첩축제)

○ 지원 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

○ 지원 제외

- **여행사 관계자**(기사, 가이드, 안내원 등) 및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투어
- **하동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단 지정 축제는 지원)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관내 관광일정을 **하동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관광
- 관광이나 **여행목적이 아닌 경우**와 지원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관광**
-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향후 완전 배제

3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



○ 단체관광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 여행시작일 7일 전까지
- 제출서류 : 【서식1】 단체관광계획서, 여행일정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 신청방법 : 우편, E-mail, 직접방문
 - 우 편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관광진흥과(슬로시티담당)
 - 이메일 : 담당자 지정 메일(사전 전화 확인) ☎055)880-2378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 단 12월 인센티브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지출완료 되어야함으로 사전 협의하여 지급 신청서 조기 제출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제출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관광진흥과(슬로시티담당)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익월에 지급
- 구비서류
 - 【서식2】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원본) 1부
 - 여행일정표 및 여행상품 안내문 1부
 - 【서식3】 관광객 숙박확인서 1부(원본)
 - 【서식4】 단체관광객(여행자) 명단 1부
 - 【서식5】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 사진대장 1부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원본)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 간이영수증 사용불가)

- 유료관광지 입장권 또는 결제 영수증
- 기차표 또는 항공권 혹은 결제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사본 1부
- 통장사본 1부

※ 구비서류 사본 제출시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 유의사항

- 여행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개인정보”가 포함된 사항을“제3자”에게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유념하시어 구비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람.

4

기타사항

- 가.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나.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하동군의 심사방법과 결정에 의함
- 다.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적용하지 않음.
- 마.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 순으로 우선 지원함.
- 바. 숙박업소 등과 담합하여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향후 인센티브 지원에서 완전 배제함.

사. 인센티브 신청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여행사 일반사항

여행사명		대표자	
업체주소	(㉠)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거래은행		계좌번호	

관광객 유치현황

[단위 : 명]

국적	숙박일자	숙박 시설명	숙박객수			관광지 (2개소 이상)	인솔자	
			계	관광객	여행사 관계자		성명	연락처

※ 여행자명단 기재사항이 부실한 경우에는 관광객 10명당 1명 기준으로 여행사 관계자로 간주합니다.

보상금신청액 : 금 원

위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여행업체명

대 표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행일정표 및 여행상품 안내문 1부. 2. 숙박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여행자 명단(별지 제4호 서식) 각1부. 3. 관광지 방문 증빙 내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4.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각1부. 5.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사본 1부. 6. 통장 사본 1부

※ 공지사항 관광객 팀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관광 일정 계획 “예시”

□ 1박 2일

		시 간			관 광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1 박 2 일	첫 째 날	08:00	12:00	240	○ 서울 → 하동읍(하동시외버스터미널) 도착	
		12:00	13:00	60	○ 중식(식당 이름 기재)	
		13:00	15:00	120	○ 삼성궁 이동 및 관람	
		15:00	16:00	60	○ 지리산생태과학관, 금오산 레포츠시설, 구제봉	
		16:00	17:00	60	○ 하동읍 이동	
		17:00	~		○ 석식 및 취침 (식당 이름 및 숙박업소 기재)	
	둘 째 날	07:00	08:00	60	○ 조식(식당 이름 기재)	
		08:00	09:00	60	○ 이동(화개)	
		09:00	11:00	120	○ 화개장터	
		11:00	13:00	120	○ 쌍계사 / 불일폭포 / 대도파라다이스	
		13:00	14:00	60	○ 중식 및 휴식(식당 이름 기재)	
		14:00	16:00	60	○ 최참판댁 / 평사리 공원 / 차문화센터 / 토지문학관	
		16:00	18:00	120	○ 송림공원 / 하동포구공원	
		18:00	~		○ 하동출발	

□ 당일

		시 간			관 광 내 용	비고
		부터	까지	소요		
당 일	07:00	11:00	240	○ 서울 → 하동읍(하동시외버스터미널) 도착		
	11:00	12:00	60	○ 하동송림공원 / 하동포구공원		
	12:00	13:00	60	○ 중식(식당 이름 기재)		
	13:00	14:00	60	○ 화개장터		
	14:00	16:00	120	○ 쌍계사 / 불일폭포 / 대도파라다이스 / 토지문학관		
	16:00	17:00	60	○ 최참판댁 / 평사리공원 / 차문화센터 / 구제봉		
	17:00	17:30	30	○ 하동버스터미널로 이동		
	17:30	~		○ 하동출발		

※ 유료관광지 : 최참판댁(박경리문학관), 쌍계사, 지리산생태과학관, 삼성궁(청학동)

[별지 제3호서식]

관광객 숙박확인서

여행사명		대표자			
업체주소	(㉠)				
관광객 숙박현황			[단위 : 명]		
국 적	숙박일자	숙 박 객 수			비고
		계	관광객	여행사관계자	
<p>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여행사명</p> <p style="text-align: right;">대 표 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숙박업소대표 귀하</p>					
<p>위와 같이 단체관광객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 숙박업소명</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소</p> <p style="text-align: right;">대 표 자 (서명 또는 인)</p>					
※ 공지사항	<p>1. 관광객 팀별로 각 1건 서류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숙박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붙임 : 숙박업소 이용 증빙서 1부(카드결제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단, 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 않음.

[별지 제5호 서식]

단체관광객 방문 증빙사진

<붙임1> 숙박업소 이용 증빙서

증빙서류

증빙종류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매출전표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	-----------------------------------	--------------------------------	--------------------------------

증빙서류(원본) 붙이는 곳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붙임2>

유료관광지 방문확인서

관광지명 :

증빙서류(입장권 또는 영수증 첨부)

붙이는 곳

하 동 군 청 귀하

<붙임3>

기차·항공 이용확인서

증빙서류(표 또는 영수증 첨부)

붙이는 곳

하 동 군 청 귀하

<붙임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하동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단체의 금융계좌번호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2020년도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지방보조금 자료관리 종결시점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2020년도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2020년도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지방보조금 자료관리 종결시점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2020년도 하동군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안함 <input type="checkbox"/>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붙임5>

하동군 유료관광지 현황

■ 쌍계사 입장료 (055-883-7019)

- 성인 2,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500원
- 30인 이상 단체 : 성인 2,200원, 청소년·군인 800원, 어린이 등 400원

■ 삼성궁 입장료 (055-884-1279)

- 성인 7,000원, 청소년·군인 4,0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3,000원
- 30인 이상 단체 : 성인 6,000원, 청소년·군인 3,000원, 어린이 등 2,500원

■ 최참판댁 입장료 (055-880-2960)

-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1,000원
- 20인 이상 단체 : 성인 1,500원, 청소년·군인 1,000원, 어린이 등 500원

■ 지리산 생태과학관 입장료 (055-880-2954)

- 성인 1,000원, 청소년·군인 8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600원
- 20인 이상 단체 : 성인 800원, 청소년·군인 600원, 어린이 등 400원

※ 최참판댁과 연계이용 시 입장료

- 성인 2,6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노약자·유공자 1,400원
- 20인 이상 단체 : 성인 2,000원, 청소년·군인 1,400원, 어린이 등 800원

■ 하동군 관광안내소

- 화개장터 관광안내소 : 055-880-5722
- 청암 관광안내소 : 055-882-5379
- 악양 관광안내소 : 055-880-2950

※ 구재봉 자연휴양림 : 070-8855-8010~8011

<붙임6>

하동군 유료이용시설 현황

▣ 하동레일파크 이용료 (055-882-2244)

하절기		동절기		비고
월요일~목요일	금,토,일,공휴일 전날, 공휴일	월요일~목요일	금,토,일,공휴일 전날, 공휴일	
2인승 : 25,000	2인승 : 30,000	2인승 : 20,000	2인승 : 25,000	
4인승 : 30,000	4인승 : 35,000	4인승 : 25,000	4인승 : 30,000	

※ 할인

- 50% 할인 : 국가유공자, 하동군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
- 30% 할인 : 하동군민, 장애인
- 20% 할인 : 2인승 10대 이상, 4인승 8대 이상을 한 회차에 동시 이용

▣ 금오산 짚와이어 이용료 (055-884-7715)

	평일	주말 및 공휴일	비고
성인	40,000	45,000	
청소년 (14세이상~19세이하)	35,000	40,000	
어린이 (8세이상~13세이하)	30,000	35,000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0 - 3호

- 2020년 제1회 하동군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채용시험 계획 재공고

하동군에서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월 22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홍보(취재·보도) 전문가	지방일반임기제 7급상당(지방행정주사보)	1명	2년	기획예산과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연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	주요 업무
홍보(취재·보도) 전문가	- 군정 홍보 보도자료 수집·작성 및 테마별 홍보 - 기획홍보물 작성 및 배포 - 하동소식지 편집 및 발간 등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자격요건(필수)
홍 보 (취재·보도) 전문가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국어국문학 등 인문계열 ▶ 직무분야 : 언론·방송기관 취재·편집 관련분야
	우 대 조 건
	1. 8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취재·보도 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1항 4호)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홍보 분야 (3년이상 경력)를 수행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5. 보수 수준

○ 보수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음

임용등급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상당)	62,044천 원	44,066천 원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20. 1. 22(금)	'20. 1. 22. ~ '20. 1. 28.	서류전형	-	'20. 1. 29.
		면접시험	'20. 1. 30.	'20. 1. 31.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20. 01. 22. ~ 01. 28.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7급 7,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3.5cm×4.5cm)

○ 응시수수료 : 7급 상당 - 7,000원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기획예산과(☎ 055-880-2042)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한자)	
주민등록번호			-	하동군 수입증지 6,7급(7,000원) 8,9급(5,000원)
주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지방일반임기제 임용시험)		
응시직급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		
2020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하동군 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응시원서는 향후 기능시험 및 면접시험에 사용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붙임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시 활용됨

<붙임 4>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경력 사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운행차량	상근 또는 상근아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0 - 4호

- 2020년 제2회 하동군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하동군에서는 2020년 제2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월 21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9급 상당)	1명	2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연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무분야	인원(명)	직급	직무내용	비고
사회복지사	1	시간선택제 임기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매환자 등록,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서비스 • 치매조기검진사업(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의뢰) • 치매예방, 인지강화교실, 쉼터운영 및 가족교실운영 • 치매인식개선사업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수행 	주35시간 (주5일) 09:00~17:00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자격요건(필수)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증 소지자 2.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 대 조 건	
1. 치매안심센터 근무 유경험자 2. 보건·의료분야 또는 노인복지 경력자 3.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가능한 자 4.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가능한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보건, 민간기관 등에서 치매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보수 수준

- 산출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4조 별표13
- 기 본 급 : 일반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의 연봉상한액(47,928천원)을 기준, 업무성격을 감안,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 업무성격 : 상한액의 50%적용
 - └ 근무시간 : 87.5%적용(주35시간 근무)

- 산출내역 : 47,928천원×50%(업무성격)×35/40=20,968천원			
【연기본급 20,968,000원/월기본급1,747,370원】			
- 2020년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표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9급상당	47,928천원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20. 1. 22(수)	'20. 1. 22. ~ '20. 1. 31.	서류전형	-	'20. 2. 3.
		면접시험	'20. 2. 4.	'20. 2. 5.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20. 01. 22. ~ 01. 31.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8급 이하 5,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관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3.5cm×4.5cm)

- 응시수수료 : 8급 이하 - 5,000원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보 건 소(☎ 055-880-6852)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2020년 제2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					하동군 수입증지 6,7급(7,000원) 8,9급(5,000원)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용시험)		
응시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		
2020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하동군 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응시원서는 향후 기능시험 및 면접시험에 사용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붙임 2 >

이 력 서

가. 공통 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	--	----------	--	-----	--

나. 응시 자격

경 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학 위	전공분야	학위 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다. 우대 사항

경 력	근무기관	재직기간	주요 추진 사항	직위
자 격 증 명	자격증명	취득일	검증기관	비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시 활용됨

<붙임 4>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경력 사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운행차량	상근 또는 상근아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전화번호: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5호

- 2020년 제2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하동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2호(2020.1.10.)호에 의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간호사)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월 23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서류전형 합격자

임용예정 부 서	분 야	채용등급	선발예정 인 원	서류전형 합격자
보 건 소 (치매안심센터)	간 호 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3	2020-2-1 장○진
				2020-2-2 강○미
				2020-2-3 손○우
				2020-2-4 김○미

2. 면접 일정 및 장소

채용분야	면접 시험				비고
	일 자	등록시간	면접시간	장 소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9급상당) 간호사	2020. 1. 29.(수)	13:30	14:00 ~ 16:00	하동군청 소회의실	(본관 2층)

※ 면접시간은 유동적임.

3. 면접 방법 : 개별 면접

4.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0. 1. 31.(금) 예정
- 발표공고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hadong.go.kr>)

5. 응시자 주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등록시간까지 등록장소에 도착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채용분야의 면접시간 종료시까지 도착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됩니다.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면접일자 3일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사항은 하동군 행정과(☎055-880-2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면접장소 위치

- 등 록 장 소 : 하동군청 행정과(본관 2층)
- 면접시험장 : 하동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 주 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 공고 제2020-85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소로2-29]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하동 도시계획도로(소로2-29)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하오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28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 나. 사업명 : 하동 도시계획도로[소로2-29]개설공사
- 다. 위치 : 하동읍 하동읍 광평리 257-10~ 113-7
- 라.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개설 L=120m, B=8m
- 마.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2. 보상대상 : 토지(16필지, 555㎡) 및 물건(총 122건) 등

※ 토지 등의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하며, [열람장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3. 공고기간 : 2020.01.28. ~ 2020.02.12.(15일간)

4. 열람기간 : 2020.01.28. ~ 2020.02.12.(15일간)

5. 손실보상 계획

- 가. 협의 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 나. 협의 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 055-880-2239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군청 본관 1층)

다. 보상 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

마. 구비서류

- ①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2통
- ② 주민등록초본 1통(전 주소 이력 포함)
- ③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 ④ 계약서, 청구서,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 승낙서
-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사항

가.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나. 편입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에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다.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이 공고 후에 설치하는 지장물, 수목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열람장소 및 문의처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9)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하동 도시계획도로(소로2-29)개설공사

② 위 치

③ 사 업 시 행 자 하동군수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보상금 지급계획조서(지장물)

연번	소재지 (하동군)	지번	물건의종류	구 조 및 규격	수량		평 가 가 액		보상금액	소유자	
							평균단가			주소	성명
							단가	금액			
1	광평리	257-7	창고	블럭스레트 14.5*6.4	92.8	m ²	146,000	13,548,800	13,548,800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주*수
			창고	블럭스레트 5.5*6.5	35.75	m ²	116,000	4,147,000	4,147,000		
			가추	블럭스레트 1*5	1	식	식	750,000	750,000		
			수도 계량기	이설	1	식	식	350,000	350,000		
			물품 이설비	건조기 등	1	식	식	465,000	465,000		
			감나무	R15	1	주	일괄	1,535,000	1,535,000		
			매실 나무	R25	2	주	↑	↑	↑		
			매실 나무	R20	1	주	↑	↑	↑		
			매실 나무	R12	2	주	↑	↑	↑		
			매실 나무	R10	3	주	↑	↑	↑		
			매실 나무	R5	2	주	↑	↑	↑		
			복숭아 나무	R15	1	주	↑	↑	↑		
			호두 나무	R20	1	주	↑	↑	↑		
			제피 나무	R6	1	주	↑	↑	↑		
2	광평리	256-7	주택	벽돌스라브 4.4*11.2+ 1.5*4.3	55.73	m ²	557,500	31,069,470	31,069,470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박*선
			주택	벽돌강관 5.7*13.4+ 4.5*2.8	88.98	m ²	510,000	45,379,800	45,379,800		
			계단/ 계단 실	블록,콘크리 트 1*5	1	식	식	1,000,000	1,000,000		
			수도	-	1	식	식				

			전/수시설					250,000	250,000		
			대문	스텐	1	식	식	515,000	515,000		
			바닥	콘크리트	5	m ²	식	100,000	100,000		
3	광평리	255-4	주택	벽돌스래브/스래브 7.5*5.2+4*2	47	m ²	410,000	19,270,000	19,270,000	하동군 하동읍 송림 3길 ***	이*자
			창고	블럭스래브 4.9*6.5	31.85	m ²	116,000	3,694,600	3,694,600		
			창고	블럭스래브/스래브2.8*2.5	1	식	식	1,050,000	1,050,000		
			가추	블럭스래브 2*3	1	식	식	420,000	420,000		
			바닥	콘크리트	10	m ²	식	150,000	150,000		
			동백나무	R12	1	주	일괄	1,485,500	1,485,500		
			감나무	R8	2	주	↑	↑	↑		
			음나무	R10	1	주	↑	↑	↑		
			매실나무	R20	2	주	↑	↑	↑		
			매실나무	R15	1	주	↑	↑	↑		
			매실나무	R10	3	주	↑	↑	↑		
			제피나무	R8	2	주	↑	↑	↑		
			가죽나무	R20	1	주	↑	↑	↑		
			가죽나무	R10	2	주	↑	↑	↑		
			가죽나무	R5	3	주	↑	↑	↑		
			구지뽕나무	R1	1	주	↑	↑	↑		
			물앵나무	R10	1	주	↑	↑	↑		
			자두나무	R20	1	주	↑	↑	↑		
4	광평리	103-3 255-7	창고	벽돌스래브 4.5*5.3+2.5*2	28.85	m ²	350,000	10,097,500	10,097,500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오*순
			계단	철골목조 1*5+2*2	1	식	식	1,500,000	1,500,000		
			계단/계단실	벽돌콘크리트 1*6	1	식	식	1,500,000	1,500,000		
			계단	벽돌콘크리트	1	식	식				

				1*2.5				1,225,000	1,225,000		
			대문	주철스라브 3*3	1	식	식	3,450,000	3,450,000		
			바닥	대리석	25	m ²	51,000	1,275,000	1,275,000		
			수도 전	콘크리트/ 장대석2*2	1	식	식	300,000	300,000		
			수도 시설	-	1	식	식	150,000	150,000		
			담장	적벽돌 7.5*1.5	1	식	식	990,000	990,000		
			담장	블록 1.5*6	1	식	식	300,000	300,000		
			화단	자연석 5*5+ 2*2	1	식	식	1,194,000	1,194,000		
			감나 무	R40	1	주	일괄	3,071,000	3,071,000		
			팥팥 나무	R8	1	주	↑	↑	↑		
			동백 나무	R6	2	주	↑	↑	↑		
			철쭉	15년생	4	군	↑	↑	↑		
			소나 무	R12	4	주	↑	↑	↑		
			단풍 나무	R5	1	주	↑	↑	↑		
			영산 홍	10년생	2	주	↑	↑	↑		
			제피 나무	R4	1	주	↑	↑	↑		
			천리 향	10년생	1	주	↑	↑	↑		
			영산 홍/철 쭉	-	15	m ²	↑	↑	↑		
			동백 나무	R15	1	주	↑	↑	↑		
			소나 무	R15	1	주	↑	↑	↑		
			목단	15년생	1	주	↑	↑	↑		
			동백 나무	R10	1	주	↑	↑	↑		
			단풍 나무	R8	1	주	↑	↑	↑		
			목련 나무	R10	1	주	↑	↑	↑		
			철쭉	-	12	m ²	↑	↑	↑		
			배롱 나무 (두절)	R20	1	주	↑	↑	↑		
			앵두 나무 (두절)	R30	1	주	↑	↑	↑		
5	광평리	105- 10	주택	블럭강판/ 스라브5*8.6 + 5.9*2.7+ 4.	72. 09	m ²	510,000	36,765,90 0	36,765,90 0	하동군 하동읍 송림 3길 ***	이*자

				7*2.8							
			창고	블럭판넬 2.6*3	1	식	식	950,500	950,500		
			가추	블럭판넬 4*2	1	식	식	640,000	640,000		
			대문	스텐스라브	1	식	식	1,200,000	1,200,000		
			대문	목조스레트	1	식	식	675,000	675,000		
			계단	콘크리트1* 5	1	식	식	600,000	600,000		
			담장	목조/블록 12*1.8	1	식	식	753,000	753,000		
			수도 천/ 수도 시설	-	1	식	식	250,000	250,000		
			바닥	콘크리트	20	m ²	15,000	300,000	300,000		
			가로 등	철재	2	식	일괄	200,000	200,000		
			매실 나무	R15	2	주	일괄	702,500	702,500		
			음나 무	R8	2	주	↑	↑	↑		
			음나 무	R15	1	주	↑	↑	↑		
			석류 나무	10년생	1	주	↑	↑	↑		
			녹차	10년생	2	주	↑	↑	↑		
			천리 향	10년생	1	주	↑	↑	↑		
			영산 홍	10년생	3	주	↑	↑	↑		
			조경 수	10년생	1	주	↑	↑	↑		
6	광평리	105- 16	주택	벽돌스라브 6.4*10+ 1.8 *4	71. 2	m ²	620,000	44,144,00 0	44,144,00 0	하동군 광평리 ***	장*레
			창고	판넬조판넬 2.3*2.3	5.2 9	m ²	150,000	793,500	793,500		
			창고	철골강판 10*8.2	82	m ²	92,500	7,585,000	7,585,000		
			가추	철골강판 2*5	1	식	식	600,000	600,000		
			계단/ 계단 실	콘크리트 1*4	1	식	식	1,000,000	1,000,000		
			다용 도실	블럭스라브 3.8*2	1	식	식	2,584,000	2,584,000		
			대문	스텐	1	식	식	700,000	700,000		

			수도	-	1	식	식	650,000	650,000		
			수도 전/ 수도 시설	-	1	식	식	250,000	250,000		
			물탱크	FRP	1	식	식	200,000	200,000		
			담장	블록 1.5*8	12	m ²	29,000	348,000	348,000		
			바닥	콘크리트	12	m ²	15,000	180,000	180,000		
			대추 나무	R6	1	주	일괄	723,500	723,500		
			목단	20년생	1	주	↑	↑	↑		
			철쭉	20년생	1	주	↑	↑	↑		
			매실 나무	R8	1	주	↑	↑	↑		
			감 나무	R40	1	주	↑	↑	↑		
			무화 과 나무	R15	1	주	↑	↑	↑		
7	광평리	113- 7	주택	블럭스레트 6.3*12.5+0 .7 *5.8+4*1.5	88. 81	m ²	410,000	36,412,10 0	36,412,10 0	경남 해 미 조 면 로 14 번 길 ***	정*완
			창고	블럭스레트 2.6*7.8	20. 28	m ²	155,000	3,143,400	3,143,400		
			창고	블럭스라브 3.5*4.2	14. 7	m ²	268,000	3,939,600	3,939,600		
			화장 실	블럭스라브 1.2*2.1	1	식	식	1,325,000	1,325,000		
			대문	철재스라브 2*2포함	1	식	식	1,200,000	1,200,000		
			계단	철재 0.6*4	1	식	식	350,000	350,000		
			물탱크	FRP	2	식	일괄	400,000	400,000		
			웬스	메쉬,기초포 함 21*1.6	33. 6	m ²	50,000	1,680,000	1,680,000		
			바닥	보도블럭 2*14	28	m ²	15,000	420,000	420,000		
			바닥	콘크리트	10	m ²	15,000	150,000	150,000		

		비닐하우스	철재 4*3	1	식	식	150,000	150,000		
		헛개나무	R30	1	주	일괄	751,000	751,000		
		가죽나무	R12	1	주	↑	↑	↑		
		가죽나무	R6	1	주	↑	↑	↑		
		남천	10년생	3	군	↑	↑	↑		
		동백나무	R6	1	주	↑	↑	↑		
		등나무(두절)	20년생	2	주	↑	↑	↑		
		기타수목	10년생	3	주	↑	↑	↑		
	합 계						302,948,670	302,948,670		

[하동도시계획도로(소로2-29호선) 개설공사]보상금 지급계획

연번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편입면적 (㎡)	감정평가	보상금액	소유자	
					평균		주소	성명
1	하동읍 광평리	113-14	도로	19	평가외	평가외		하동군
2	하동읍 광평리	113-7	대	43	373,000	16,039,000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14번길 ***	정*완
3	하동읍 광평리	105-16	대	75	349,500	26,212,500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장*례
4	하동읍 광평리	105-10	대	44	349,500	15,378,00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송림3길 ***	이*자
5	하동읍 광평리	102-3	대	21	308,500	6,478,500		국(기획재정부)
6	하동읍 광평리	103-3	대	25	349,500	8,737,500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오*순
7	하동읍 광평리	255-7	전	27	349,500	9,436,500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오*순
8	하동읍 광평리	255-4	대	58	354,500	20,561,000	하동군 하동읍 송림 3길 ***	이*자
9	하동읍 광평리	256-8	대	15	354,500	5,317,500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박*선
10	하동읍 광평리	256-7	대	47	356,500	16,755,500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박*선
11	하동읍 광평리	257-7	대	52	363,500	18,902,000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주*수
12	하동읍 광평리	257-10	도로	53	평가외	평가외		하동군
13	하동읍 광평리	254-4	도로	4	평가외	평가외		국(건설교통부)
14	하동읍 광평리	257-3	도로	14	평가외	평가외		국(건설교통부)
15	하동읍 광평리	451-1	도로	36	평가외	평가외		국(건설교통부)
16	하동읍 광평리	113-13	대	22	373,000	8,206,000	경상남도거제시아주로73 ***	정*남
	합계					152,024,000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6호

- 2020년 제1회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하동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1호(2020.1.10.)호 및 제2020-3(2020. 1. 22.)호에 의거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홍보전문가) 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서류전형 합격자

임용예정 부 서	분 야	채용등급	선발예정 인 원	서류전형 합격자
기획예산과	홍보(취재·보도) 전문가	지방일반임기제 7급상당 (지방행정주사보)	1	2020-1-1 정○영

2. 면접 일정 및 장소

채용분야	면접 시험				비고
	일 자	등록시간	면접시간	장 소	
홍보(취재·보도) 전문가	2020. 1. 30.(목)	13:30	14:00 ~ 15:00	하동군청 소회의실	(본관 2층)

※ 면접시간은 유동적임.

3. 면접 방법 : 개별 면접

4.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0. 1. 31.(금) 예정
- 발표공고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hadong.go.kr>)

5. 응시자 주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는 시험 당일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등록시간까지 등록장소에 도착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채용분야의 면접시간 종료시까지 도착하여 등록하지 않으면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됩니다.
-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면접일자 3일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사항은 하동군 행정과(☎055-880-2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면접장소 위치

- 등 록 장 소 : 하동군청 행정과(본관 2층)
- 면접시험장 : 하동군청 소회의실(본관 2층)
- 주 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7호

▶ 2020년 제2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공무원 ◀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하동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2호에 의거 시행한 2020년 제2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0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 최종합격자

분 야	임용등급	최종 합격자 (응시번호)
간 호 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감 (9급상당)	2020-2-2
		2020-2-3
		2020-2-4

【문 의 처】

경상남도 하동군 행정과 인사담당자
(☎ 055-880-2153)

하동군 공고 제2020-118호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0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 하오니 희망하시는 차량소유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30.
하 동 군 수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신청기간 : 2020. 2. 3.(월) ~ 2020. 2. 14.(금)
- 사업물량 : 406,824천원, 약253대분(예산범위내)
 -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가능
- 신청방법 : 서류 누락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
 1. 접 수 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별관 1층)
 2. 접수시간 : 토·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18시)내 접수
 - 신청자가 사업물량 초과시 우선 순위순으로 선정
 -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차량
 - ② LPG 화물차 신차구입 신청차량
 - ③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제작년·월·일)

□ 조기폐차 지원 기준

- 조기폐차 신청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 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신청일 현재 하동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 인터넷에서 배출가스 등급조회(<http://emissiongrade.mecar.or.kr/>)
- 콜센터(1833-7435) 안내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차량등록원부상 등재된 차량 소유주 주소 하동 등록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도로용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5.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6.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7.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

○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

1.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추가지원
 - .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신규 등록시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 조기폐차 후 LPG화물차 신규 등록시 추가지원 제외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20.1.1일 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시(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기준가액의 200% 추가지원
2. 2002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2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3.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지원율 10%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4.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5.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말소등록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수출말소 및 차량초과말소 제외
6. 생계형 차량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를 첨부

사안별 생계형차량 적용기준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수급자인 경우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5,500cc 초과 7,500cc 이하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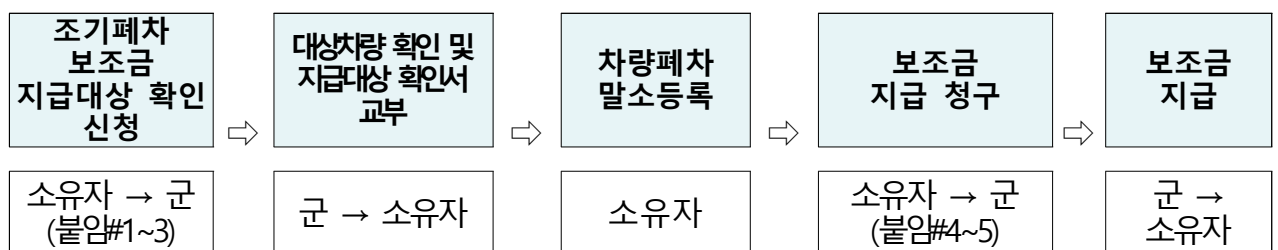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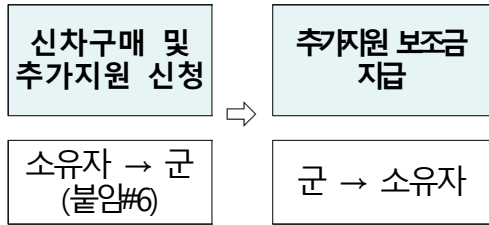
□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절차

-기본지원



-추가지원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

○ 조기폐차 신청시 구비서류

- ① [붙임1]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②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③ 자동차등록원부(갑) 1부
- ④ 소유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⑤ 신청일 당시 1개월 이내 실시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성능검사 결과 1부
- ⑥ [붙임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단, 대리 접수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도 함께 제출
 - * 차량소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 소유자중 1명을 신청인으로 하고 또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 * 법인소유인 경우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신청자 신분증 사본 제출
- ⑦ 차량 사진 4매 (앞·뒤·좌·우)
- ⑧ 차량 소유주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조기폐차제도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
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노
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로 확정 전에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 (선정 후 보조금 청구시)

- ① [붙임5]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② 자동차말소증빙서류
- ③ 소유자 통장 사본
- ④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하동군 발행분)

【유의사항】보조금 신청은 폐차 완료 후 상기서류 구비하여 확정통보 후 1개월 이내까지
환경보호과 방문 접수(기간 이후 폐차 및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수출말소나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 신차 구매 및 추가지원 보조금 지급 청구

- ① [붙임6]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
- ②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 ③ 소유자 통장 사본

※ 신차 구매로 인한 추가보조금은 자동차 제작사에 직접 지급 가능

**【유의사항】추가보조금 신청은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후 4개월 이내까지
환경보호과 방문 접수(기간 이후 추가보조금 신청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자 취소 ◀

- 조기폐차 지원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차구입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후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내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기타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및 「‘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문의

- 전화 : 하동군 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담당자(☎055-880-2564)

[붙임1] 신청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운행차 배출가스 매연수치()% (운행차배출허용 기준 수치()%)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원부(갑) 3. 소유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2.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_____는(은) 수임자_____에게
 차량번호_____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 붙임 1. 인감(법인)증명서 1부.
- 2.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_____ (인)
 인감(법인)도장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 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 하동군수 귀중

[붙임4]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	기본	원 (₩)		
	가액	추가	원 (₩)		
<p>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수 (인)</p>					
<p>※ 참고사항</p> <p>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확인서 수령 후 폐차완료하고, 확정통보 후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p> <p>2.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붙임5]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원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폐차 후 신차구매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톤		
	등록일자(예정)	년 월 일 (년 월)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p>※ 첨부서류</p> <p>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p> <p>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p> <p>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p>				

[붙임6]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신설>

확인번호	차 량 구 매 보 조 금 지 급 청 구 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규 구매 차량 정보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CC <input type="checkbox"/> 용도: ()		
		<input type="checkbox"/> 차명 : <input type="checkbox"/> 정원(승합) : 명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년 월)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원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신차구매 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도로용3종) 등록증(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2020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신청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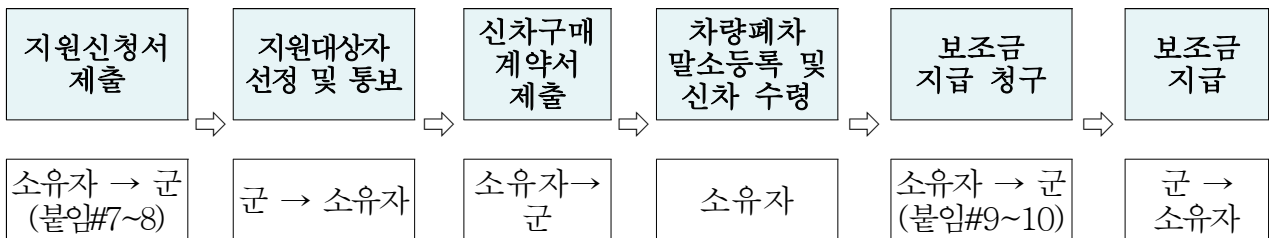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2020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 하오니 희망하시는 차량소유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 30. 하 동 군 수

□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 신청기간 : 2020. 2. 3.(월) 09:00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물량 : 100,000천원, 25대분
- 지원금액 : 4,000천원/대(정액지원)
- 신청방법 : 서류누락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
 - 접 수 처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별관 1층)
 - 접수시간 : 토·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18시)내 접수
- 지원대상
 - 경유차 폐차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 구입예정인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자동차등록원부상 등재된 차량 소유주 주소 하동 등록
 - ※ 조기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지원 후 400만원 추가 지원)

○ LPG 화물차 신차 보조금 지급 절차



○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 [붙임1]사업 지원신청서 1부, 자동차 등록증 사본(폐차 대상 경유차량),
- [붙임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차량 소유주 주민등록등본

② (법인인 경우)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서류,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대상자 선정 후 14일 이내 신차구매계약서 제출

○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선정 후 보조금 청구시)

① (공통서류)

- [붙임3]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 [붙임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자동차 말소등록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LPG화물차 신차),
-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법인인 경우) 공통서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서류, 인감증명서 및 고유번호증 사본 각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 (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붙임11]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지원대상자 취소 ◀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기타

-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및 「‘20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문의

- 전화 : 하동군 환경보호과 운행차 저감사업 담당자(☎055-880-2564)

[붙임5]

위 임 장

수 입 자 (위임을 받는 자,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신차구입 대상(폐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입자에게 상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하동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8호

▶ 2020년 제1회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하동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1호(2020.1.10.) 및 제2020-3호(2020.1.22.)에 의거 시행한 2020년 제1회 하동군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31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 최종합격자

분 야	임용등급	최종 합격자 (응시번호)
홍보(취재·보도) 전문가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7급상당)	2020-1-1

【문 의 처】

경상남도 하동군 행정과 인사담당자
(☎ 055-880-2153)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공고 제 2020 - 7호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공고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체험·홍보·운영 등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채용하여 마을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6.

하 동 군 수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모집 구분	채 용 분 야		선발 예정 인원	채용기관(마을)
	직 책	담 당 업 무		
계			4명	
계약직 (임시직)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리시스템 (RUCOS)내 마을 자료관리 ○ 농촌체험·휴양마을 회계·문서 등 마을사무관리 ○ 농촌체험·휴양마을 행사기획 및 진행, 고객관리, 주민교육 등 체험마을에 관련된 전반적 사항 	1명	○ 화개면 의신베어빌리지 농촌체험휴양마을
			1명	○ 옥중면 정티움 농촌체험휴양마을
			1명	○ 악양면 평사드레 농촌체험휴양마을
			1명	○ 북천면 직전 농촌체험휴양마을

2.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제1차시험 : 서류전형

나. 제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보수 및 지원기간

가. 보 수 : 월 180만원

나. 지원기간 : 2020. 1. 1. ~ 2020. 12. 31. (1년)

4. 응시자격 및 역할

가. 자 격 :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한 자
(단, 남자일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제외 대상 : 지원 대상마을 대표자와 직계 존·비속, 친인척인 자

나. 거주지 : 하동군 관내 거주자(주민등록기준)

다. 역 할

-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
- 농촌체험·휴양마을 종합관리시스템(RUCOS)내 마을 자료관리
-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따른 회계·문서 등 마을사무 관리
- 농촌체험·휴양마을 행사기획 및 진행, 고객관리, 주민교육 등 체험마을에 관련된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항

라. 우대대상

-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따른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사 교육과정 이수자, 관련 관광학과 졸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 농업인 자녀 등을 우선적으로 채용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5.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2020. 2. 6.(목) ~ 2020. 2. 14.(금)

나. 1차시험(서류전형) : 2020. 2. 17.(월)

-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유선 통지함

다. 2차시험(면접시험) : 2020. 2. 20.(목),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라. 합격자 발표 : 2020. 2. 24.(월)

-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면접장소는 변경 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 2. 6.(목) ~ 2020. 2. 14(금). (9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관광담당

※ 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붙임 출력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직접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서식별첨

- 1) 지원서 1통(별지 제3호 서식)
- 2)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 3) 주민등록 초본, 등본 각 1통
- 4) 각종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응시원서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 당일 정해진 시간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결격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함.
-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 통보함.
- 사무장 채용기관은 해당마을이며, 행정기관에서는 사무장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 지원함.
- 문의처 : 하동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관광담당(☎055-880-2684)

[별지 제3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농촌체험 · 휴양마을사업 사무장 지원사업 지원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나 이(만)		②학력(전공)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채용희망마을			
④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⑤직무수행계획 (요약)			
⑥주요경력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20년도 농촌체험 · 휴양마을사업 사무장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 ② 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부터 기재
(예시 : 00학교 00대학 00과(전공) 00년도 졸업)
- ③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⑤ 직무수행계획(요약) : 사무장 채용시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별첨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⑥ 주요경력 : 예시된 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
서상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
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년,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
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마을 종합관리시스템(RUCOS)내 마을자료 관리,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⑦ 기타 특이사항 : 채용희망마을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농촌체험 · 휴양마을사업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①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②채용희망마을				
③추진목표				
④직무수행계획 개요				
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⑥직무수행계획	분기	담당업무	주요내용 및 계획	비고

이상과 같이 2020년도 농촌체험 · 휴양마을사업 사무장 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 ③ 추진목표 : 사무장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마을 종합관리시스템(RUCOS)내 마을자료 관리,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 ⑥ 직무수행계획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추진 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하동군 공고 제2020 - 172호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기 지원사업 신청 공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주요배출원인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절감을 위해 「2020년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기 구입지원」을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6.

하 동 군 수

□ 지원계획

- 대 상 : 음식물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지원규모 : 60,000천원(군비 30,000, 자부담 30,000)
- 지원기준 : 처리기기 설치비용의 50% 지원
 - 기기렌탈은 연간렌탈비용의 50% 지원
- 대상자 결정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하동군청(환경보호과)
- 신청기간 : 2020. 2. 14까지(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제출서류
 - 음식물류폐기물처리기기 지원 보조사업 신청서(별지1호서식)
 - 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별지3호서식)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필증 1부

□ 지원기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대상사업장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 우선순위
 - ① 1순위 : 기 지원(임대) 사업장
 - ② 2순위 : 공공기관(학교)
 - ③ 3순위 : 일반음식점 중 연간처리량 다량우선
 - ④ 4순위 : 사업장면적(m²), 집단급식인원수(집단급식소에 한함)

[음식물처리기기 지원기준]

- 지원기준 : 기기구매 또는 임대료(1년기준)의 50% 지원
- 지원기기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처리기기

구 분	해 당 사 항	
총 족 조 건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 감량기준	○ 규모미만 폐기물재활용시설
관 련 법 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다목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
관 련 규 정	○ 가열·건조 방법으로 부산물 수분함량 25퍼센트 미만 감량 또는 ○ 발효·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함	○ 폐기물을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3 제3호가목1)부터 4)가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미만의 시설. ○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해당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로 한정

※ 신청사업자 현황에 따라 조정가능

□ 유의사항

- 본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신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문의사항 및 의문사항은 하동군청 환경보호과로 (055-880-2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지원사업 신청서식 (별지1호서식)
 2. 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별지2호서식)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별지3호서식)

(붙임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지원 사업』 보 조 사 업 신 청 서

1. 신청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팩 스	

2. 음식물폐기물 처리현황 (다량배출사업장 기 신고현황)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m ²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m ²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처리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년)	부산물 발생량 (kg/년)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년)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년)	위탁계약 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3. 음식물처리기기 신청

제 품 명 (모델 및 제조사)	처리 방식	처리 용량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방식 (렌탈 또는 구입)
				계	군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음식물처리기기 지원 사업』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 .

신청업체명 :

(직인)

하동군수 귀하

(붙임 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기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사업개요

- 사업명 :
- 사업목적 :
- 추진시기 :
- 사업내용 :
- 소요예산 :
- 기대효과 :

추진계획(사업이 2이상일 경우 작성, 단위사업별로 나열)

- 일 시 :
- 장 소 :
- 사업대상 :
- 사업내용 :
- 소요예산 :
- 기대효과 :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

구 분	금액(비율)	부담 주체	부담 방법	비 고
지방보조금	천원(%)	하동군청	지방보조금 교부	
자기자금 부담액 등	천원(%)	00단체 대표000외 00명	회비수입/기부, 후원	

○ 산출내역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단체요청 예산액				사용방법
		소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산출기초 (단위:원)	
계			“예	시“		
단위사업1	소계	2,120	1,600	520		
	물품구입	1,600	1,600		예시)00구입(강의재료비) 800,000원×2박스 =1,600,000원	보조금 카드 결제
	인쇄비	320		320	예시)홍보물 제작 40원×8,000부=320,000원	보조금 카드 결제
	강사비	200		200	예시)강사비 100,000원(1급)×2회(시간) =200,000원	계좌 이체

□ 전년도 주요 활동실적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활 동 내 역	비 고
세부사업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붙임 3)

지방보조사업 업무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이용사무의 명칭 : 하동군 지방보조사업 업무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

본인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지방보조사업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귀하는 고유식별번호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합니다.

3.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 지급에 따른 「체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 지급시 본인의 체납정보를 조회하는데 동의합니다.
(귀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조사업 업무 이외에 따로 보관하거나 이용되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 . .

하동군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0 - 9호

- 2020년 제2회 하동군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

하동군에서는 2020년 제2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2월 10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계약기간	근무 예정부서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9급 상당)	1명	2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계약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연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무분야	인원(명)	직급	직무내용	비고
사회복지사	1	시간선택제 임기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환자 등록,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서비스 치매조기검진사업(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의뢰) 치매예방, 인지강화교실, 쉼터운영 및 가족교실운영 치매인식개선사업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수행 	주35시간 (주5일) 09:00~17:00

3. 근거 법령

-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라. 하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나. 자격요건

임용예정분야	자격요건(필수)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증 소지자 2.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 조건	
1. 치매안심센터 근무 유경험자 2. 보건·의료분야 또는 노인복지 경력자 3. 운전면허 소지자로 운전가능한 자 4. 컴퓨터 활용(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가능한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국가, 보건, 민간기관 등에서 치매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보수 수준

- 산출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4조 별표13
- 기 본 급 : 일반임기제공무원(9급상당의 연봉상한액(47,928천원)을 기준, 업무성격을 감안,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 업무성격 : 상한액의 50%적용
 - └ 근무시간 : 87.5%적용(주35시간 근무)

- 산출내역 : $47,928\text{천원} \times 50\%(\text{업무성격}) \times 35/40 = 20,968\text{천원}$
【연기본급 20,968,000원/월기본급1,747,370원】

- 2020년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표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9급상당	47,928천원	-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점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나.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20. 2. 10(월)	'20. 2. 10. ~ '20. 2. 20.	서류전형	-	'20. 2. 21.
		면접시험	'20. 2. 25.	'20. 2. 26.

※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하동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 접수 : 2020. 02. 10. ~ 02. 20.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하동군청 행정과 행정담당(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 소 : 우)52333, 경남 하동군 군청로23(하동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등기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8급 이하 5,000원) 및 응시표 반송용봉투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동봉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8.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 서식)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 (3.5cm×4.5cm)
- 응시수수료 : 8급 이하 - 5,000원

※ 하동군청 민원과에서 해당 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나. 이력서 1부(붙임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다. 자기소개서 1부(붙임 서식, A4 2매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서식, A4 5매 내외)

마.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바.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사.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아.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 민간 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체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자.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원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출력 또는 공단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출력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원서 접수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에 변경사항을 하동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 응시자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문의 : 행 정 과(☎ 055-880-2153)
 - 담당직무 관련문의 : 보 건 소(☎ 055-880-6852)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분야	임용직급	비 고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원서	
2. 이력서	
3. 자기소개서	
4. 직무수행계획서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7. 주민등록초본	
8.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포함 제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등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응 시 원 서(원본)

본인은 2020년 제2회 하동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소	()			하동군 수입증지 6,7급(7,000원) 8,9급(5,000원)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용시험)		
응시직급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상당)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 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호		-		
2020 년 월 일 하동군인사위원회위원장 ㉞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하동군 행정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응시원서는 향후 기능시험 및 면접시험에 사용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사무관, 방호서기보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붙임 3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시 활용됨

<붙임 4>

경력(재직) 증명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경력 사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운행차량	상근 또는 상근아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①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①

- *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닐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붙임 5 >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 안내문

하동군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

- 일반직공무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정보>

- 사진 및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성별,주소,이메일,휴대폰번호,병역사항 등)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학력 · 경력 · 자격사항 등

<선택정보>

- 자기소개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학력 · 경력 · 자격사항 등
- ※ 상기 선택정보를 미작성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서류전형·면접시험 시 직무수행 적합성 등의 판단을 위해 활용됩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 기간 전 · 후 보유, 이용,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해당란에 체크 ✓ 표시

2020. . .

작성자 성명 : (서명)

하동군 공고 제2020-186호

하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의 범위를 수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와 같은 내용으로 단서 신설
- 수사, 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닌 한다.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0년 3월 2일까지 하동군(기획예산과, 전화 880-2014, FAX 880-2019, e-mail evilblesse@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생략)</p> <p>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p> <p>3.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p> <p>---. <u>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하동군 공고 제2020-187호

하동 도시계획도로[소로3-9]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하동 도시계획도로(소로3-9)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하오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11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 나. 사 업 명 : 하동 도시계획도로[소로3-9]개설공사
- 다.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86-1 ~ 193-4
- 라. 사 업 규 모 : 도시계획도로개설 L = 202m, B = 12m
- 마. 사 업 기 간 : 2020. 1. ~ 2020. 12.

2. 보상대상 : 토지(20필지, 4,545㎡) 및 물건(총 48건) 등

※ 토지 등의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하며, [열람장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3. 공고기간 : 2020. 02. 11 ~ 2020. 02. 26

4. 열람기간 : 2020. 02. 11 ~ 2020. 02. 26

5. 손실보상 계획

- 가. 협의 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 나. 협의 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9)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군청 본관 1층)

다. 보상 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

마. 구비서류

- ①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2통
- ② 주민등록초본 1통(전 주소 이력 포함)
- ③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 ④ 계약서, 청구서,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 승낙서
-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사항

가.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나. 편입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에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다.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이 공고 후에 설치하는 지장물, 수목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열람장소 및 문의처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9)

[하동도시계획도로(소로3-9호선) 개설공사]보상금 지급계획

일련번호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편입면적 (㎡)	감정평가		소유자	
					평균	보상금액	주소	성명
1	광평리	4	도	135				농림축산식품부
2	광평리	2-5	답	101				하동군
3	광평리	5	구	1,310	110,500	144,755,000	경상남도 하동군 읍내동 ***	하동*** 조합
4	광평리	3	도	152				농림축산식품부
5	광평리	1-2	답	194	315,500	61,207,00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강*순
6	광평리	1-1	답	54	248,000	13,392,00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송*동
7	읍내리	166	구	4				농림축산식품부
8	읍내리	193-4	중	124	342,500	42,470,000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	재단법인***
9	읍내리	193-2	중	84	342,500	28,770,000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	재단법인***
10	읍내리	193-6	답	51	328,500	16,753,50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2길 10, ***	최*용
11	읍내리	193-1	답	58	364,500	21,141,00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2길 10, ***	최*용
12	읍내리	202	구	7				농림축산식품부
13	읍내리	192-3	답	150	312,000	46,800,000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 ***	허*대
14	읍내리	192-2	답	76	315,500	23,978,000	경상남도 하동군 황천면 학리 ***	신*우
15	읍내리	201	도	10				농림축산식품부
16	읍내리	200	구	7				농림축산식품부
17	읍내리	186-2	답	145	323,500	46,907,500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산로 123, ***	김*현
18	읍내리	186-1	답	298	314,000	93,572,000	경상남도 하동읍 읍내리 ***	이*의
19	읍내리	185-3	답	16				하동군
20-1	광평리	2-2	답	1,569	275,500	216,129,75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	최*순
20-2	광평리	2-2	답	1,569	275,500	45,923,710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	김*인
20-3	광평리	2-2	답	1,569	275,500	68,061,820	경남진주시진양호로239번길13 평거하우스스토리***	김*인
20-4	광평리	2-2	답	1,569	275,500	102,144,210	경남 하동군 황천면 ***	김*인
	합계					972,005,490		

보상금 지급계획조서(지장물)

연번	소재지 (하동군)	지번	물건의종류	구 및 규격			평 가 가 액		보상금액	소유자	
							평균단가			주소	성명
							단가	금액			
1	읍내	193-2 193-4	세탁실	판넬/판넬 6*10	60	m ²	215,000	12,900,000	12,900,000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	재단법인 ***
		"	창고	스라브 2*5	10	m ²	195,000	1,950,000	1,950,000		
		"	창고	판넬/판넬 2*4	1	식	식	975,000	975,000		
		"	정화조	25인용	1	식	식	7,000,000	7,000,000		
		"	계단	콘크리트 3*3	1	식	식	900,000	900,000		
		"	전기계량기	이설	1	식	식	290,000	290,000		
		"	가스보관함	철재	1	식	식	100,000	100,000		
		"	수도시설	-	1	식	식	300,000	300,000		
		"	바닥	콘크리트	20	m ²	18,000	360,000	360,000		
		"	바닥	보도블럭 2.2*4.5+1.2*14	26.7	m ²	15,000	400,500	400,500		
		"	바닥	우레탄 8*13	104	m ²	18,000	1,872,000	1,872,000		
		"	담장	벽돌/철재 1.2*16	19.2	m ²	145,000	2,784,000	2,784,000		
		"	담장	블록 1.5*20	30	m ²	37,500	1,125,000	1,125,000		
		"	보관함	철재 0.4*1.5,H 1.2	1	식	식	50,000	50,000		
		"	놀이기구	이설	1	식	식				

								1,950,000	1,950,000		
		"	물품이설비	온수보일러포함	1	식	식	3,500,000	3,500,000		
		"	편백나무	R20	7	주	일괄	2,286,000	2,286,000		
		"	무화과나무	R30	1	주					
		"	철쭉	10년생	2	주					
		"	비파나무	R6	1	주					
		"	느티나무	R40	1	주					
		"	느티나무	R25	1	주					
2	읍내	193-1 193-6	수도계량기	이설	1	식	식	360,000	360,000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산복2길 10, ***	최*용
		"	조경력	4*10	1	식	식	820,000	820,000		
		"	화단	자연석 2*8	1	식	일괄	1,392,000	1,392,000		
		"	조경석	이설	1	식					
		"	잔디	-	24	m ²	5,000	120,000	120,000		
		"	감나무	R20	1	주	일괄	2,327,000	2,327,000		
		"	감나무	R15	1	주					
		"	감나무	R5	2	주					
		"	구기자나무	10년생	8	주					
		"	호랑가시나무	R6	1	주					
		"	대추나무	R6	2	주					
		"	녹차	10년생	15	M					
		"	사과나무	R7	1	주					
		"	블루베리나무	5년생	1	주					
		"	석류나무	5년생	3	주					
		"	블루베리나무	묘목	6	주					
		"	영산홍	5년생	30	주					
		"	소나무	묘목	4	주					
		"	사과	R12	2	주					

			나무								
		"	자목 련나무	R30	1	주					
		"	장미	15년생	5	주					
		"	매실(조형) 나무	-	1	주					
		"	금송	묘목	1	주					
		"	박하 꽃	-	6	m ²					
3	읍내	186- 2	매실 나무	R10	3	주	일괄	240,000	240,000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산로 123, ***	김*현
4	읍내	186- 1	매실 나무	R12	18	주	일괄	1,755,000	1,755,000	경상남도 하동읍 읍내리 ***	이*의
	합 계								45,756,500		

하동군 공고 제2020-188호

진교 도시계획도로[소로2-6]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진교 도시계획도로(소로2-6)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대하여 공고하오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붙임의 토지 등 내역서를 열람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2월 11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 나. 사업명 : 진교 도시계획도로[소로2-6]개설공사
- 다. 위치 :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398 ~ 372-1
- 라. 사업규모 : 도시계획도로개설 L = 163m, B = 8m
- 마.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2. 보상대상 : 토지(14필지, 1,382㎡) 및 물건(총 71건) 등

※ 토지 등의 세부사항은 개별 통지하며, [열람장소],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

3. 공고기간 : 2020. 02. 11 ~ 2020. 02. 26

4. 열람기간 : 2020. 02. 11 ~ 2020. 02. 26

5. 손실보상 계획

- 가. 협의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나. 협의 장소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9)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군청 본관 1층)

다. 보상 방법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보상금 공탁

마. 구비서류

- ①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2통
- ② 주민등록초본 1통(전 주소 이력 포함)
- ③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 ④ 계약서, 청구서,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 승낙서
-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타사항

가. 보상계획은 보상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에 관한 구비서류 및 보상금 내역은 개별 통지합니다.

나. 편입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나, 토지 등에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다.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이 공고 후에 설치하는 지장물, 수목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열람장소 및 문의처 : 하동군청 도시건축과(☎ 055-880-2239)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진교 도시계획도로(소로2-6)개설공사			
② 위 치				
③ 사 업 시 행 자	하동군수			
④ 이 의 신 청 제 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토지 및 물건 조서를 열람하고 조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진교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개설공사]보상금 지급계획

연번	소재지 (하동군)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감정평가	보상금액	소유자	
					평균		주소	성명
1	진교리	368-1	도	43				하동군
2	진교리	372-1	전	75	266,000	19,950,000	경상남도진주시진주대로1317** *	백*정
3	진교리	373	전	286	226,500	64,779,000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1180 ***	이*완
4	진교리	400-2	대	453	256,000	115,968,00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	박*일
5	진교리	385	대	20	282,500	5,650,000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	정*식
6	진교리	386	대	62	282,500	17,515,00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	김*수
7	진교리	387	대	94	282,500	26,555,000	경상남도 통영시 명정동 ***	안*홍
8	진교리	827-39	도	163			국	국토교통부
9	진교리	398-2	대	13			국	기획재정부
10	진교리	398	대	69	358,500	24,736,500	대전광역시서구청사로281,***	신*일
11	진교리	416-4	도	60			국	국토교통부
12	진교리	416-9	대	4				하동군
13	진교리	416-7	대	10	566,500	5,665,000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	문*란
14	진교리	416-6	도	30			국	기획재정부
	합계					280,818,500		

보상금 지급계획조서(지장물)

연번	소재지 (하동군)	지번	물건의 종류	구 조 및 격	수량		평 가 가 액		보상금액	소유자	
							평가단가			주소	성명
							단가	금액			
1	진교리	416-7	창고	블럭강판 (5+6)/2*5	27.5	m ²	183,500	5,046,250	5,046,250	경남 하동군 진교면리 ***	문*란
	"	"	화장 실	블럭스라브 1.8*2	1	식	식	1,475,000	1,475,000		
2	진교리	416-7	물품 설비	-	1	식	식	500,000	500,000	경남 하동군 진교면리 ***	신*준
3	진교리	827-39	주택	블럭스레트/ 판넬 11*6	66	m ²	293,500	19,371,000	19,371,000		국
	"	"	창고	블럭강판 1.5*2	1	식	식	200,000	200,000	대전광역시 서구청 사로281, ***	신*일
4	진교리	398	주택	블럭스라브 12.5*9	112.5	m ²	536,500	60,356,250	60,356,250		
	"	"	계단	벽돌콘크리트 1*5	1	식	식	600,000	600,000		
	"	"	계단	벽돌대리석 2.5*2	1	식	식	600,000	600,000		
	"	"	창고	목조강판 3*1.5	1	식	식	200,000	200,000		
	"	"	바닥	콘크리트	90	m ²	15,000	1,350,000	1,350,000		
	"	"	수도	-	1	식	식	675,000	675,000		
	"	"	느티 나무	R10	1	주	일괄	2,259,500	2,259,500		
	"	"	감나무	R3	1	주					
	"	"	동백 나무	3년생	20	주					
	"	"	감나무	R15	1	주					
	"	"	밤나무	R25	1	주					
	"	"	무화 과나무	20년생	1	주					
	"	"	음나무	R12	2	주					
	"	"	감나무	R10	1	주					
	"	"	동백 나무	R5	2	주					

		"	느릅나무	R60	1	주					
		"	느릅나무	R30	2	주					
		"	매실나무	R4	1	주					
		"	사철나무	5년생	1	주					
		"	사철나무	R15	1	주					
		"	앵두나무	R3	1	주					
		"	울타리	사철나무	6	M					
5	진교리	387	울타리	철망 1.2*20	1	식	식	200,000	200,000		
6	진교리	386	창고	목조스레트 2.2*6	13.2	m ²	72,500	957,000	957,000		
		"	돌담	1.8*20	36	m ²	21,500	774,000	774,000		
		"	동백나무	R5	1	주	일괄	215,000	215,000		
		"	영산홍	15년생	5	주					
		"	구갑죽	R3	1	주					
7	진교리	385	가추	목조강판2*12 보일러실포함	1	식	식	750,000	750,000		
		"	돈사	블록 3*6	1	식	식	260,000	260,000		
		"	가죽나무	R5	10	주	일괄	430,000	430,000		
		"	가죽나무	R3	20	주					
8	진교리	400-2	대문	적벽돌/목조 1.8*3	1	식	식	925,000	925,000		
		"	담장	갯머리/블록 1.5*30	45	m ²	35,500	1,597,500	1,597,500		
		"	조경석	이설	1	식	식	300,000	300,000		
		"	사철나무(두절)	R8	1	주	일괄	3,321,000	3,321,000		
		"	읍나무	R6	1	주					
		"	차나무	10년생	1	주					
		"	단풍나무	R10	2	주					
		"	무궁	R12	1	주					

			화나 부								
		"	회양 목	15년생	3	주					
		"	공 화나 부	R6	4	주					
		"	대 추 나 부	R10 지지대포함	1	주					
		"	라 일 라	R12	1	주					
		"	가 죽 나 부	R20	1	주					
		"	목 단	15년생	2	주					
		"	단 나 부	R5	2	주					
		"	금 목 서	R40	2	주					
		"	단 나 부	R15 H1.5	1	주					
		"	소 나 부	W1 H1	1	주					
		"	모 과 나 부 (분 재)	R12	1	주					
		"	호 랑 가 나 부	R8	1	주					
		"	주 목	R8	1	주					
		"	남 천	20년생	1	주					
		"	동 백 나 부	R3	1	주					
		"	산 기 나 부	-	15	m ²					
		"	감 나 부	R12	1	주					
		"	매 나 부	R12	1	주					
		"	감 나 부	R8	2	주					
		"	가 죽 나 부	R6	7	주					
		"	가 죽 나 부	R10	7	주					
		"	울 타 리	녹차	10	M					
		"	기 타 수 목	R8	1	주					
9	진교	373	매 나 부	R15	22	주	일괄	2,840,000	2,840,000	경상남도 진주시 이현동 1180 ***	이*완
		"	울 타 리	사철나무	10	M					
10	진교	372-1	매 나 부	R8	5	주	일괄	310,000	310,000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13 17***	백*정
합 계									105,512,500		